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50호, 2025. 2. 7.,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93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 · 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 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 "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 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 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장애인복 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 한다.<개정 2018. 12. 11.>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 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이 법에서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 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이르기기 파매어지		
④ 이 법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란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 •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 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 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		
전나] 등을 말한다.<선절 2016. 12. 2.>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등)「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 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역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 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제37조·제38조 및「수의사 법」제17조의3·제17조의4에 따른다.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하	
4. 의료기기 한전관리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 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 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증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 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야하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이 제공을 이처한 수 있다.	
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2장 의료기기위원회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 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4. 23., 2021. 8. 17.>

, 2019. 4. 23., 2021. 8. 17.>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재평가에

사항 하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위탁 범위 등

| 5.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위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의료기기에 관한 중요 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2021. 7. 20.>

2021

3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신설 2019, 4, 23, 2021, 7, 20, 20 안다.<신월 2019, 4, 23,, 2021, 7, 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건복지부상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1.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의료기기 관련 학회의장이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표(1/1" - -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4.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23.>

으로 구성된 문파워현외를 할 구 있다. <신설 2019. 4. 23.>
(7) 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점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 7. 20.>
(8)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1. 7. 20.>

제3조 삭제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9. 10. 22., 2020. 3.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후, 지난, 한다, 이 도로 마음을 단하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 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 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 한 조사・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일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함을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조사·의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 수 2. 우 3. 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되도 13 21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조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만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1.]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8. 9. 11.>1

1. 18.>

[본조신설 2015, 12, 31] [제3조의2에서 이동 <2 <2018. 9. 11.>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1. 5., 2022. 동

제18조(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허가를 하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이하 "시판 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조허가증에 시판 후 조사기간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2. 1. 2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의료기기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 시판 후 조사를 면제할 수있다.<개정 2022. 1. 21.>
1.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신개발의료기기

:의료기기 우리나라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료기기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식품 |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국 | 사용경험이 있는 신개발의료기기 | 삭제<2022. 1. 21.> | 삭제<2022. 1. 21.> 의 슝-회

- (3)
- **(4**)
- ⑤ 삭제<2022. 1. 21.> [제목개정 2022. 1.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 18.>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2. 1. 18.>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6조 삭제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삭제<2019.

10. 22.>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0.

2019. 10. 22.>
③ 분과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위 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위 위 다.

⑤ 분과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 · 의결 한 것으로 본다.

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 6. 30., 2019. 10. 22.>
⑦ 제6항에 따른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소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장 "은 "소분과위원"으로, "분과위원"은 "소분과위원"으로 본다. < 신설 2016. 5. 31., 2019. 10. 22.>

"소문과위원 으도 준다. 오면 글 2010. 3. 31., 2019. 10. 22.>
⑧ 소분과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또는 다른 소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것으로 본다 2016. 31.>

.<신설 2016. 5. 31.>
⑤ 분과위원회와 소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6. 30., 2013. 3. 23.,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8조(연구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 학여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 다.

고. ② 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 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 • 연구한 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위하여 10인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임명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는 수당과 여비를, 위원회에 출석한 전 문가에게는 여비를, 연구위원 및 연구 원에게는 조사・연구 등을 위한 연구비 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		
제1절 제조업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초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없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7. 12. 19. 2018. 3. 13. 2018. 12. | 없나.<개성 2013. 3. 23, 2015. 1. 28, 2017. 12. 19, 2018. 3. 13, 2018. 12. 11., 2024. 10. 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3 자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해당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물의약품안전목무고 이정하여 고시하는의로기기: 품목보이 제조선고를 제조이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제조하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인이라 된 제조이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인이라 되었어 따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보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신고를 하려는 저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신고를 하려가 나 1개 이상의 제조신고를 함함 제 1항에 따라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인하기 또는 인증을 시청하는 지원이나 제조 인증을 이다. 28 1. 28.>
⑤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 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자료, 기술 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⑥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제3조(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① 법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제조소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제조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2024. 1. 16.> 지호한하는 지방식품의 이 하당되지 않는 지방식 하는 기반이 하는 기반이 하는 기반이 하는 기반이 하는 기반이 하당되지 한 기반이 하는 기반이 하당되지 한 기반이 하는 기반이 이 이 하당되지 아니한다이 이를 증명한 수 있는 전문이 기반이 하는 기를 함하지 아니한다이 이 기반이 하는 기를 함하여 하는 기를 하지 이 하는 기를 하는 기를 하지 이 하는 기를 하는 기반이 하는 기를 제4조(제조허가・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품목류별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목류별 제조인증: 제2조에 따라지정된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인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 3. 2024. 8. 7.> 품목별 제조허가: 다음 각 목의 의료

법제처 6

기기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따라 이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에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기다고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⑦ 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제조업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조업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 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 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제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제조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①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허가와 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대상・절차・기준・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기정 2013, 3, 23, 1014, 1, 28, 2015, 1, 28, 2017, 13, 3, 2017, 13, 2014. 1. 28., 2015. 1. 28., 2017. 12. 19., 2024. 2. 6.>

가. 3등급・4등급 의료기기 나. 2등급 의료기기 중 제1항제1호, 이호 다목 및 이 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를 제외한 의료기기 다. 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 한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의료기기(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품목별 제조인증: 2등급 의료기기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로서 익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의료기기

중에지한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제5조(제조허가의 절차) ① 보 제6조제 2항에 따라 의료기기에 제조하가의 제조하가의 제조하가의 제조하가의 제조하가의 제조하가의 제조하가의 제조하는 병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포함한 대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포함한다가 대조를 전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두 시설을 두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두 시한다. 1. 함을 다 이 기조에 마르 기술문서 등 기술문사 등 기상한 기수에는 이 기소하는 경우 이 기소하는 경우 이 기소하는 경우 이 기소하는 경우 이 기소하는 기소를 보고 되었다. 1. 함을 보고 되었다. 1. 함을 보고 되었다. 1. 함께 다 한 기원하다. 1. 함께 되었다. 1. 함께 다 대상 기 하가 1. 시한 기 1

평가 및 요양급여대상 · 비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조허가 시에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신설 2016. 7.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신설 2016. 7. 29., 2020. 4. 1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제3항 본문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신설 2016. 7. 29.>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은법제7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제조허가를 받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6. 7. 29.>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2016. 7. 29.>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 간 자료 및 의견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7, 29,>

2016. 7. 29.>

제6조(제조인증의 절차) ①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 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②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인증을 신청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제6호서식의 제조인증서를 발급하고, 제조인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8. 6. 14.>
1. 인증변호 및 인증연월일 모델명) 3 제1항에 따른 제조인증증을 실정하는 경우면을 및 모델명) 3 제1항에 따른 제조인증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관한 서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고시하다.

제7조(제조신고의 절차) ①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5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②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조신고증을 발급하고, 제조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4. 8. 7.>

14., 2024. 8. /.> 1.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2.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신고(조건부 제 조신고와 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 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지용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기준) ①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조허가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품질관리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품질관리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하업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언 등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가 되는 지조어가 되었으로 위한 시험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이하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라 안되에 따른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하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하 "의료기기 시험 (이하 "의료기기 시험 (이라 "의로 제조업자 기관(이라 학단) 또는 제조업자 기관(이라 학단) 보으려는 자 및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이라 학단) 되었다. <개정 2017. 5. 1.> 1.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

5. 1.>
1.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공정에 관련된 제조시설 및 기구
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적합함 을 인정받은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시험에 관 련된 시설 및 기구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법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 집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1.>
② 의료기기(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 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

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 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6. 12., 2020. .. 31, 2021. 6. 24, 2024. 1. 16.>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5. 기 자료 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 6. (③) 세외신단용 의료기기에 내아며 세 1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 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 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2021. 6. 24., 2024. 1. 16.> |1. 16.>
|1. 개발경위, 측정 원리・방법 및 국내 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4.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 에 관한 자료
|5.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의 자표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표준물질 및 검체보관 등에 관한 가. 남. 라. 자료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 관한 자료 <u>이미 허</u>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7.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비교한 자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 허가 · 신고 등의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 1. 16.>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의뢰를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

자료의 작성요령, 각 첨부자료의 요건 •면제절차 • 범위, 심사 범위 • 기준 • 절차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1 4., 2024. 1. 16.>

제10조(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받거나 하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 의료기기

의료기기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의료기기
3. 「약사법」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4.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받거나 제조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의료기기
5.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5.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6. 자가 사용용 또는 구호용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의료기기 |7. 삭제<2018. 12. 31.>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관리체 |계, 검사성능 및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임상검사실(질병 |의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의료 |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제11조(품질책임자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 6. 15, 2020. 4. 13, 2022. 12. 19.>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가. 안경렌즈・콘택트렌즈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안경사나. 치과재료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방사선사라. 박사선발생장치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방사선사라. 삭제 <2020.5.1>마. 물리치료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물리치료 또는 자활훈련에 필요한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물리치료사고 기소자경병에 따르이고기사

|의료기기를 세조ㆍ수입하는 경우: 물리 |치료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의공기사 |또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의2. 「자격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인한 의료 |기기 RA(Regulatory Affairs) 전문가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제9항에 따른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 지 의료기기 관년 분야 다 한다)을 신 공한 사람 4. 대학등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 로서「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 학원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석사학

제32조(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나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 6. 15., 2018. 6. 14., 2018. 12. 31.,

2024. 1. 16.>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상시 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 의료기기 의료기기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상시 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3. 「약사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3의2. 「약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4.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료기기 5.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보기기 5의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제품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입 하는 의료기기 5의3. 법 제27조에 따르 도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이는 기표기기 5의3.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의료기기 6. 자가 사용용 또는 구호용 의료기기 6. 자가 사용용 또는 구호용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7. 삭제<2018. 12. 31.>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관리체계, 검사성능 및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임상검사실에서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②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 대상에서제외하는 의료기기의 수입 절차・대상및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수리업자 · 한대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그 허가증 · 인증서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허가증 · 인증서 또는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 인증서 또는 신고증(허가증 · 인증서 또는 신고증(허가증 · 인증서 또는 신고증(허가증 · 인증서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1. 6. 24.>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자의 경우가. 제조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나. 제조 · 수입 허가증: 식품의약품안전청장나. 제조 · 수입 허가증: 식품의약품안전청장나. 제조 · 수입 인증서 및 제조 · 수입신고증: 정보원의 장 2. 삭제 < 2021. 6. 24.>
3. 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 임대업자의 경우: 수리업소 ·

판매업소・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는 극물시시시성 · 극물시시도시시 · 시장 · 군수 · 구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 정보원의 장, 특별자치시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보원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ㆍ인증서 또
는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 2018. 6. 14., 2021. 6. 24.> ③ 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 는 인증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한 확인 또 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
③ 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로 보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을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조 업소ㆍ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정보워
의 경에게 제출약역약 인디,<계경
2018. 6. 14.>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①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이하
"품질책임자"라 한다)는 의료기기의 제
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
• 감독, 제조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를 수행한다.

구행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의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품질책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교육을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무에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7. 20.>

2021. 7. 2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1. 7. 20.>

7. 20.>
⑥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직무범위, 교육내용・시간・방법과 절차, 교육비, 교육실시기관의지정 요건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0.> 7. 20.>

[본조신설 2014. 1. 28.]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2.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제도 및 기술
3.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 3. 의표기기의 제조 및 품열판디에 될 요한 법령·제도 및 기술 4. 그 밖에 의료기기의 제조관리·품질 관리·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간은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3단비교표)「의료기기법」 한다.
③ 품질책임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책임자로 근무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6. 24.> 제14조(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1. 21.>
1. 정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교육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기위한 교육 관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인력 등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인청서에 다음 각 호의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21.> 1.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 한 자료 3. 수강료 산정의 근거자료 4. 교육시행규정 5. 교육기본계획 5. 교육기본계획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있다.<개정 2022. 1. 2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원 1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2018. 6. 14 .<개정 2018. 6. 14.>
⑤ 교육실시기관이 제4항에 따라 지정 받은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의료기 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 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전서성에게 세출해야 한다.<선열 2018. 6. 14., 2022. 1. 21.>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교육실시기관의 변경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료기기 품질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정시에 선정사용을 적어 대부어야 한다. <신설 2018. 6. 14.>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사실,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4.>
③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로는 실비 (實質 수준에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전형한다
지정 2018. 6. 14.>
⑤ 제항부터 제8항가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의 서부사항 및 지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15조(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군수사항 등)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군수사항 등)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근수사항등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의 교육기복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교육 보대상 및 내용 등을 말한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약 공단적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고전 인정보기의 인도별 교육계획에 따라 고등을 실시할 것
2. 제13으의 연도별 교육계획에 따라 지금의 연도별교자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함하여 승인을 받을 다음 실시할 것
3. 교육교자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함을 가진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할 것
5. 전년도의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② 제 기업과 학생에게 보고 함의 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② 제 기업과 가실에게 보고 함의 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② 제 기업과 가실에게 보고 함의 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함의 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함 것
② 제 교육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로 개형 2022. 1. 21.

	,
제6조의3(제조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료기 기는 제조어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및원지료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로서 취고인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이니한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이내가 있다고를 바 이 지나지 아니한 의료기기와 사용하는의료기기로 인적하는 원자재를 하는 인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자대를 시용하거나 함유한 의료기기 3. 소해면상되증(海綿狀腦症)의 감면 가능성이 있는 원자대를 시용하거나 함유한 의료기기 3. 소해면상되증(海綿狀腦症)의 감면 가능성이 있는 원자대를 사용으로 전치이 있는 원자대를 사용으로 전치하는의료기기 시로서 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에 적합하고, 인체에 직 한 가능성이 지존에 적합하고, 인체에 직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의료기기 제조에 적합하고 의료기기 제조에 적합하고 의료기기 제조에 적합하고 의료기기 제조인의 라는 제조인공을 받거나 제조신고의 기단음 기가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에 작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적응증(適應症) 또는 제조인공의 가인 의료기기의 적용증(適應症) 또는 이로기기의 적용증(適應症) 또는 이로기기의 적용증(適應症) 또는 이로기기의 적용증(適應症) 또는 이로기기의 작용증(適應症) 또는 이로기기의 작용증이 전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명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명칭 (본조신설 2015. 1. 28.]	
명칭 I보조시설 2015 1 281	
[[근ㅗ근큰 2013. 1. 20.]	

제6조의4(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지정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문서심사기관은 기술문서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기술문서심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기술문서심사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 • 원리 • 성능 •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법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5.1.> 5. 1.>

5. 1.>
(2) 의료기기(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인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 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6. 12., 2020.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6. 12., 2020. 12. 31., 2021. 6. 24., 2024. 1. 16.> 1.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12. 31, 2021. 6. 24, 2024. 1. 16.>
1.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다.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다. 방사선에 관한 자료다. 방사선에 관한 자료다. 방사선에 관한 자료 다. 방사선에 관한 자료 나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다. 건강의 관한 자료 나 건정성에 관한 자료 나 인정성에 관한 자료

자료

자료
6.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③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
1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

개발경위, 측정 원리·방법 및 국내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4.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 에 관한 자료 5.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 관한 자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7.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비교한 자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 허가・신고 등의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 1. 16.>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의뢰를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16.> ⑥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첨부자료의 요건 • 면제절차 • 범위, 심사 범위 • 기준 • 절차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1. 4., 2024. 1. 16.>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분야별로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운영기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대음착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운영기준에 관한 서류
3. 기술문서 등의 심사분야에 관한 서류 5류 7 4. 정적 로서 류
4.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기술문서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
2.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
2.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
3.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
3.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명칭 기기기술문서심사기관의 전우에는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5. 1.] 제15조의3(기술문서심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운영기준을 지킬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기술문서심사결과를 보고할 것
3.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사본 및 기술문서심사이 관한 기록을 기술문서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
4. 그 밖에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작 소. 4. 그 밖에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조성 · 발급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첫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 건 [본<u>조신설 2017. 5. 1.]</u>

제7조(조건부허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을 때 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증하 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① 식품의약품안 제조허가 또는 23 제1항에 따른 조건부허가, 조건부인 또는 조건부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제5조(제조허가의 절차) ①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하는 서류 일관리체계를 갖추었음 등(이하 "기술문서 등"이라 한다) 또는 제9조제 1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 등(이하 "기술문서 등"이라 한다) 또는 제9조제 4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이라 한다) 보급시 등이 지나지 하다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이 나한 것.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해결되었다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시원 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이 기소에 하다는 경우에는 기술무서 등의 시원이 따라 제조공정 또는 위탁계약서 1항에 따른 시청한 제우에는 기상을 시품의약를 신청한 제우에는 기상에 되지 제소하가 되었다는 의사항을 보급하고 있어 제조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조어가 신청(조건부 제조업허가와 그 변경하가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첨부자로의 작성으로 기상이 되었다는 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하여 되었다는 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하여 되었다. 하은 식 시한다. 시플

당은 식품의약품안전서상이 성하여 고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 신청과 함께「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등을 제기 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신청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신청사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자료사평가원장과 상호 공유하고 신의료기육이 되었으며, 제조허가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원 의견을 지하는 지원 2016. 7.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9., 2020. 4. 1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9조의2제3항 본문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7. 29.>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제조허가

를 받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6. 7. 29.>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 간 자료 및 의견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7. 29.>

| 사본|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조제1항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7.>

다.<개성 2024. 8. 7.>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조제1항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4. 8. 7.>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성 2018. 6. 14. 2024. 8. 7.>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정보원의 장은 조건부제조업허가, 조건부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하거나 조건부 제조신고대장에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조건을 적고별지 제13호서식의 조건부 제조업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의 조건부 제조허가증, 별지 제15호서식의 조건부 제조 인증서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조건부 제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4. 8. 7.>

제17조(조건 이행의 통보 및 확인) ① 제16조에 따라 조건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 인증도는 신고의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청 2018. 6. 14.>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건 이행 수 후 제10호제5항에 따른 조건부제조이가증, 조건부제조인증서 및 조건부 제조업허가증, 조건부제조인증서 및 조건부제조업허가증,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하증,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하증,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인증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신고증으로 바꾸어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대장에 조건 이행날짜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4. 8. 7.>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하면서 제조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류또는 품목이 시판된 후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 기간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이하 "시판 후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체에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23., 2015. 1. 28., 2018. 12. 11., 2021. 8. 23., 2015. 1. 28., 2018. 12. 11., 2021. 8 1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 어느하나 이상이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비교하여 완전히 새로운 신개발의료기기가. 작용원리나. 원재료의 종류 또는 분량. 다만,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7.> 당한다. 다. 시술방법, 사용부위 등 사용방법 라. 성능 또는 사용목적 2.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 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 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키키 기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의료기 기의 특성상 시판 후 조사 기간을 제 1항에 따른 기간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 도의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도의 조사기간을 성할 수 있다.<개성 2021. 8. 17.>
③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8. 17.>
④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업자는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업자는 시판 후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및 실시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정 2021. 8. 17.>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국민보건에 중대한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판 후 조사를실시하는 중에도 조사 계획서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해당 허가를 취소하여야한다.<신설 2021. 8. 17.>
⑥ 제4항에 따르 자기 심의 기자 에 이 이기로 내수 있다. 한다. <신설 2021. 8. 17.> ⑥ 제4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방법・절 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17.> [제목개정 2021. 8. 17.]

제18조(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허가를 하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이하 "시판 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조허가증에 시판 후 조사기간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2. 1. 21.>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의료기기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 시판 후 조사를 면제할 수있다.<개정 2022. 1. 21.>
1.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신개발의료기기 말의료기기
2. 우리나라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국 외 사용경험이 있는 신개발의료기기 ③ 삭제<2022. 1. 21.>

⑤ 삭제<2022. 1. 21.> [제목개정 2022. 1. 21.]

제18조의2(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등) ①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기 시판후 조사계획 승인 신청서에 시판 후 조사 목적・기간・방법・대상 수 및 실시기관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시판 후기관에 관합 경부하여 의료기기의 시판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게 제출해야 한다.

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

보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시판 후 조사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고시한다.

[본초신설 2022. 1. 21.]

제18조의3(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

라 시판 후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및실 시상황 등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 16호의3서식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판 후 조사 대상에 대한 관찰 기록 등 기초자료 2. 시판 후 조사에 대한 분석・평가결 과에 관한 자료 3. 시판 후 조사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의료기기 시 판후 조사 계획서 승인일부터 최초 1년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 다 하되, 보고 기한은 각 보고 대상 기 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판 후 조사 기간 중 마지막 보고는 법 제8조의2제 1항에 따른 검토를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작성방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8조의2(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① 시판 후 조 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식품의 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판 후 조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부작용 사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건 보안 결과 해당 의료기기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대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회수・폐기의 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시판 후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해당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기록 등 식품인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후속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후속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후속 조치의 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8조의3(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및 실시상황 등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정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판 후 조사 대상에 대한 관찰 기록등 기초자료 | ... 시판 후 조사 대상에 대한 관찰 기를 기초자료 | 2... 시판 후 조사에 대한 분석 · 평가결 과에 관한 자료 | 3... 시판 후 조사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자료 | 2... 자료 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자료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일부터 최초
1년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하되, 보고 기한은 각 보고 대상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판 후 조사기간 중 마지막 보고는 법 제8조의2제 1항에 따른 검토를 신청할 때 제출한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18조의4(시판 후 조사에 따른 결과 제출)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의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로서 국내 시판 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
2.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사례로서 부작용 및 안전성에 관한 국내외 자료

스용 사데도 |국내외 자료 |구내외 표

국내외 자료
3.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통지서에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18조의5(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 · 폐기 등의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 · 회수 ·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들 등시에야 한다. 1. 의료기기의 명칭 2. 조치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

	를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9조(재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28.>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절차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려는경우에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품목을 결정한 후 다음각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재평가 대상품목 2. 재평가 신청기간 3. 재평가 대상품목 2. 재평가 신청기간 3. 재평가 대상품목이 속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 신청기간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기 재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산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3호의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품목에대한 재평가를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재평가 대상품목의 제조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재평가결과 시안을 1개월 이상 열람시킨 후 재평가결과를 시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과 면제범위및 재평가범위와 실시기준 등에 관한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 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거나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적은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4. 2. 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 2항 및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있다.<개정 2013. 3. 23., 2015.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인력 및 기구를 갖춘 의료기관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 점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2. 6.>
1.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할 것.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시험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의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안시험에 수용 중인 자(이하 이 호에서 "수용자"라 한다)를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용자를 그대상자로 할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임상시험의 내용과 임상시험 중 시

제2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 법제10조세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상시험계획승인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 및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라 제2호 및 제3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2, 2020. 5. 1.> 2020. 5. 2020. 5. 1.>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 계획서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 준엑,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 든 시설 준에 적 는 자료 3. 제92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개정 2024. 1. 16., 2024. 8. 7.>
1. 임상시험의 제목
2.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법제10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하 "임상시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해당 기관에 대한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임상시험의 책임자・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자료 고로 악더는 자의 성명 및 주 소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개요(사용목 적, 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 8. 임상시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 다)의 선정기준・제외기준・인원 및 그 근거 9. 임상시험기가 |근거 9. 임상시험기간 10. 임상시험방법(사용량・사용방법・사용기간・병용요법 등을 포함한다) 11. 관찰항목・임상검사항목 및 관찰 검사방법 12.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13. 중지・탁란 기주 |사양 13. 중지・탈락 기준 14. 유효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에 따른다) 15.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 준・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6. 대상자동의서 서식 17.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18. 임상시험 후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19. 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20.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 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1. 임상시험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또는 손상에 노출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목정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한 경 우
3.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임상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 내용・시기 및 방법, 임상시험의 실시기준, 임상시험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및 임상시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3. 23., 2015. 12. 29.>

따라 제조 허가 · 신고 등의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설 2024.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 16., 2024. 8. 7.> 1.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 시험 가. 1. 16.>

제21조(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이하 "임상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료기관이어야 한다.<개정 2020. 4.

의료기고 기 13.>
13.>
1.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한방병원

3.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전문병원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등 및 수련치과병원의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병원
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임상시험센터②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별지 제22호서식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8, 12, 31, 2017, 2017, 2017, 2017, 2018, 12, 31, 2017, 2018, 12, 31, 2017, 2018, 12, 31, 2017, 2018, 12, 31, 2017 삭제 <2018. 12. 31.>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등에 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을 지정하 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임상시험기 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법 제10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고정식으로설치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관에서만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관에서만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관에서반 내상사들 모습할 수 있는 임상시험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된 감염병관리기관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설치・운영 되는 의료기관 또는 격리소・요양소・ 진료소 [본조신설 2024. 8. 7.]

제22조(집단시설) 법 제10조제4항제 2호 본문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 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제3호・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

지2호·제3호·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지원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설치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5.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토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지원복지시설

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 고조시골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 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 은 자가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3. 「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제24조(임상시험 실시기준 등) ① 법제10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임상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 3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2024. 8.

에야 안다.<개성 2024. 1. 16., 2024. 8. 7.>
1. 임상시험계획서에 의하여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기관 또는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상시험 참여기관에서 일사기험을 기심하는 경우 임상시험기관이 해당 기관이 해당 가는 경우 임상시험기관이 해당 기관이 작임하는 경우 임상시험기관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할 것
3. 임상시험의 책임자는 전문지식과의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할 것
4.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사이하는 기술이 기재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서문서의 등한 비대면 동의를 받을 것 다만, 대상자의 아저대책을 각구한 건 다산자의 아저대책을 각구한 건 7.>

친야

게 보고할 것

1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다 등인을 받지 않은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제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자료를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할

7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상시험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안 일을 준수할 것 인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3 제8호더목1)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료를 참하고, 임상시험을 종료하였을 때에로 참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26호서 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 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 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의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에 기의한 사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2.> (3) 장은 임상시험의 의로자 및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를 된 기관에 장은 임상시험 관련 자료: 임상시험의 장은 임상시험 관련 자료: 이 의사이를 다음하다 보존하여야 한다.
1. 제조하다 의상시험 관련 자료: 임상시험의 장은 임상시험 관련 자료: 임상시험의 경우로서 환자에 대한 개인 보조하다의 의무기록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인 함보를 기가면 임상시험의 경우로서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기가면 임상시험의 경우로서 환자에 대한 개인 임상시험의 등인을 받아 대상자의 등의 경우에 바른다.<개정 2024. 1. 16.>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의 기상되었다. 16.> ⑤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의료기기의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에 관하여 사람 외의 것을 대상으로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이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하다.

역품의 작품인인시장의 현장시장로 도 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비임상시 험엔 필요한 시설・전문인력 및 기구를

성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비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 •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비임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 • 발급하고 그 비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및 운영 •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8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기준) ①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조허가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품질관리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하거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언 등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지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지 위한 시험을 「식품・의약품분야시험을 이정 바라 이 경우지상시험사기관"이라 한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시험사기관"이라 "의료기기 시험사기관"이라 "의료기기 시험사기관"이라 한다) 보는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조허가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제조소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5. 1.>

5. 1.>
1.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공정에 관련된 제조시설 및 기구 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의료기기 시험 • 검사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적합함 을 인정받은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 우: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시험에 관 련된 시설 및 기구

제24조의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비임상시험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추어야 한다.
②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장비ㆍ기구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류 류
3.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의료기기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호

.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다 지
3. 비임상시험분야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하다 의 인터넷 함께에서 용해 하는 기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5. 1.] 지24조의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계획서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것2. 비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및 감사업무는 해당 비임상시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수행하도록 할 것3. 비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임상시험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음을 증명할수 있을 것4. 비임상시험과 관련된 자료・기록을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할 것가. 의료기기 허가・변경허가 또는 의료기기 인증・변경인증을 위한 시험:비임상시험성적서 발급일부터 5년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시험:비임상시험성적서 발급일부터 3년[본조신설 2017. 5. 1.]

제11조(제조 허가・신고 등의 사전 검토)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10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허가・인증・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검토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승인 등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④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 범위와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법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1.>

5. 1.>
(2) 의료기기(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인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 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1200.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6. 12., 2020. 12. 31., 2021. 6. 24., 2024. 1. 16.> 1.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기. 이미 어기 오는 인증을 얻는 제품파비교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다. 방사선에 관한 안전에 관한 자료다. 방사선에 관한 자료다. 방사선에 관한 자료다. 벙사선에 관한 자료다. 청등에 관한 자료나 성능에 관한 자료나 성능에 관한 자료나 성능에 관한 자료나 성능에 관한 자료가 인정성에 관한 자료가 인정성에 관한 자료가 인정성에 관한 자료

자료

자료
6.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③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
1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

개발경위, 측정 원리·방법 및 국내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에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 관한 자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7.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비교한 자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 허가・신고 등의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 1. 16.>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의뢰를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16.> ⑥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첨부자료의 요건 • 면제절차 • 범위, 심사 범위 • 기준 • 절차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1.

제2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실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상시험계획승인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상시험계획승인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 및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 및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라 제2호 및 제3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2,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2.,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 계획서

4., 2024. 1. 16.>

기획석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제9조제2호제2호보드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지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16., 2024, 8. 7.>

같다.<개성 2024. 1. 16., 2024. 8. 7.>
1. 임상시험의 제목
2.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법
제10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임상시 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 관(이하 "임상시험 참여기관"이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임상시험의 책임자・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 소 조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개요(사용목 적, 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 8. 임상시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 다)의 선정기준・제외기준・인원 및 그 다)의 선정기군・세외기군・인권 및 그 근거 9. 임상시험기간 10. 임상시험방법(사용량・사용방법・ 사용기간・병용요법 등을 포함한다) 11. 관찰항목・임상검사항목 및 관찰 검사방법 12.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 「영립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 12. 사항 |사항 13. 중지・탈락 기준 14. 유효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에 따른다) 15.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 준・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6. 대상자동의서 서식 17.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18. 임상시험 후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사항
19. 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20.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
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 허가・신고 등의 사전 검토
를 받은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 1.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이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 16., 2024. 8. 7.> 1.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 시험 가. 법 제19조에 따른 기순규석에서 이한 임상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임상시험 상시험 나. 체외 또는 체표면에서 생체신호 등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의료기기를 대상

으로 하는 임상시험 다. 의뢰자 없이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 중 대상자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적다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는 임상시험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 라 제출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상 시험계획승인서를 발급하고, 임상시험 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 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4. 1.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 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 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1. 16.> 1. 16.>

제25조(사전 검토의 대상 등) ① 법 제 11조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16.>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 2. 제9조제2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 2항제도하나 되었다. 16. 에 소에 28에 0조 포는 끝는 또 세 3항제5호나목에 따른 임상시험 또는 일 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 기

기 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혁신의료기기 지정 후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되었고 이 따른 임상적 성 등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기기 되었다.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신설

의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신설

2024. 1. 16.>
1. 제9조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문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제2항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및 임상적성능시험 계획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의료기기 사전검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실시 세선 조시 그리 기표 기계 입니다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4.

2010. 0. 14., 2024. 1. 16.>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법 제10조에 따라 임상시 험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체조

안선서성 2.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의 경우: 정보원의 장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의 장은 사전 검토의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의 의료기기 사전검토 결과통지서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4. 1.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1. 16.>
--	---

제12조(변경허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인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 23., 2014. 1. 28., 2015. 1. 28., 2021. 7. 2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조업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조업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 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 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 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④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7. 12. 19.> 12. 19.>

제5조(제조허가의 절차) ①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하는 서류 일관리체계를 갖추었음 등(이하 "기술문서 등"이라 한다) 또는 제9조제 1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 등(이하 "기술문서 등"이라 한다) 또는 제9조제 4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이라 한다) 보급시 등이 지나지 하다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이 나한 것.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해결되었다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시원 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이 기소에 하다는 경우에는 기술무서 등의 시원이 따라 제조공정 또는 위탁계약서 1항에 따른 시청한 제우에는 기상을 시품의약를 신청한 제우에는 기상에 되지 제소하가 되었다는 의사항을 보급하고 있어 제조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조어가 신청(조건부 제조업허가와 그 변경하가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첨부자로의 작성으로 기상이 되었다는 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하여 되었다는 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하여 되었다. 하은 식 시한다. 시플

당은 식품의약품안전서장이 성하여 고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 신청과 함께「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등을 제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신청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신청사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자료사명가원장과 상호 공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원장과 상호 공유하고 신의료기술여 제조허가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기원이 되었으면 제시할 수 있으면, 지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2020. 4. 13.>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9., 2020. 4. 1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9조의2제3항 본문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7. 29.>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제조허가

를 받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6. 7. 29.>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 간 자료 및 의견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7. 29.>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 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2024. 1. 16.

21., 2024. 1. 16.>
1.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소프트웨어만으로 개발・제조되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신고한 의료기기(이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 한다)의 제조소는 제외한다]
2.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자 . 된 료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

료 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 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 여야 한다.<개정 2016. 6. 15.>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5.>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인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2. 1. 21.>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

6. 14, 2022. 1. 21.>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의료기기의 설계, 재료, 화학적 구성요소, 에너지원, 제조과정 등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5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서류
3. 해당 품목의 제조소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 또는 시험을위탁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표 2에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제조소는 제외한다) 이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따라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제조품목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품목의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 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허가ㆍ인증에붙여진 조건에 상당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개정 2018. 6. 14.> 붙여신 조선에 상당하는 조선을 붙일수 있다. <개정 2018. 6. 14.>
⑤ 제3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제조품목의 외관, 포장재료, 포장단위 등의 변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을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6. 14.> 기나 먼정인고를 된 있으로 모기 기 이 2018. 6. 1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12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변경을 명하여 이를 변경한 경우로한정한다.<개정 2022. 1. 21.> 한정한다.<개정 한정한다.<개정 2022. 1. 21.>
1. 법 제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변경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술문서 또는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변경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결과 검토에따른 후속 조치
4. 법 제9조에 따른 재평가
5. 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 변경
6. 법 제31조에 따른 부작용 보고에 따른 조치 2022. 1. 21.3 는 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정보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8. 6. 14.> 를 ⑦ 양을 식어야 한다.<개성 2018. 6. 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인증 • 변경신고의 기준, 절차, 자료의 요건, 면제범위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① 제조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가시험(自家試驗) 등 생산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30 한다.<개정 2013. 3. 23., 2015. 28

②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성 2013. 3. 23.>
③ 제조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라 한다)중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주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하 "거의료기관 하여서는 아니의료기관 기관 하여서는 아니의료기관 기관 하여서는 아니의료기관 기관 하여서는 아니의료기관 제정 이익등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제공하는 비위 장인, 이하 "견본품 제공 학의 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제공하는 범위이 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제공하는 비위 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8. 8.>
④ 제조업자는 음질책임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8. 8.>

2023. 8. 8.>
⑤ 제조업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책임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 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1. 28.,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투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4., 2022. 1

할 것
13. 종업원의 TIC
하고, 종업원에게 품실어 기기의 생산에 필요한 교육 • 운도로 공할 것
14. 시판 후 조사, 재평가, 추적관리대 상 의료기기 관리, 안전에 관한 정보관리(부작용 보고 관리를 포함한다)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15.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제 조하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나하을 지킬 것

지. 기교기년 프로구의 제기 되게기 제 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가. 별표 2 제2호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붙여서 출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검사의 내용 및 결과, 검사필증 발행일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출고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한 것 인 보는 경 16.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의되된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영을 지킬 것 을 지킬 것 가. 별표 2 제2호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장치, 것합한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발 행<u>학</u> 것 행할 것 나. 검사필증의 발행 절차 · 방법, 회신 기간,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지시 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3.> |13.>
1. 해당 연도의 의료기기 생산실적 및수출실적
2. 의료기기의 생산 중단사유, 중단량 및 중단일정(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4., 2022. 1.

와 같다.<개정 2020. 12. 4, 2022. 1. 21.>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수입업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교차오염이나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할 것 2. 의료기기의 입출고 및 품질관리(시험 기준 및 방법, 표시사항 및 포장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문서와 부속품의 보관・출하에 대한 관리기록을 작성하네 하고, 그에 따라 수입 및 품질검사에관한 수입단위별 기록 일 건복 만처리 기록을 살지하는 기록을 작성하는 기록을 막성하는 기록을 막성하는 경우에는 제품인 경우에는 명교제품인 경우에는 명교제품인 경우에는 명교제품인 경우에는 열관제품인 경우에는 열관제품인 경우에는 10일부터 5년(제품 수명이 5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할 것 1. 열관제품인 경우에는 열관되었음을 검증한 후 기계 제품의 경우 전기・기계적 기적 안전과 전자파 안전을 확보한 기적 안전과 전자파 안전을 확보한 기적 안전과 전자파 안전을 확보한 기적 가 일로기의의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나 역임의료기기의 제조사명 및 제조국명

다. 모양 및 구조·완제품의 자가품질 관리시험규격 라. 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의료기기 용기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사항
마. 설치방법 및 순서(설치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만 해당한다)
바. 멸균방법・멸균기준 및 멸균판정에 관한 사항(멸균 포장된 제품만 해당한다)
사. 제품표준서의 제정자 및 제정연월일(개정한 경우에는 개정자・개정연월일 및 개정사유를 적는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하기 8. 다음 각 독의 사양이 포함된 수입판리기준서를 작성 · 비치할 것가. 제품관리 및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나. 시험검사결과 판정 및 불합격품의처리에 관한 사항다. 시험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입의료기기 제조업자와의 연락바바 다. 시험업시의 관리에 관의 관한 연락 및 사이업의료기기 제조업자와의 관한 연락 및 제정 전화 기기 제조업자와 및 제정 전화 기기 기기 제조업자와 및 제정 조업자와 의 제장 및 가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및 제정 조업자와 의 제정 후 인사 이 기기 제정 한 및 가 대한 기기 기기 위해 기기 의료 기기 의료 기기 의료 기기의 함의 기기 의료 기기의 함의 기기 의료 기기의 제공 함의 기기 의료 기기의 제공 함의 기기 의료 기기 방법 마. 수 필표 4 세3오에 따다 직업임들 인정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의료기기로 서 같은 호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는 같은 호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후 수입한 것으로 본다. 16.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17. 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최신의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수입 및 품질관리 또는 수입관리를 할 것

18. 시판 후 조사, 재평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안전에 관한 정보관리(부작용 보고 관리를 포함한다) 등 시 지흥할 것
18. 시판 후 조사, 재평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안전에 관한 정보관리(부작용 보고 관리를 포함한다)등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19.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수입한 의료기관을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사항을 지킬 것가. 제7호다목에 따른 시험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붙여서 출고할 것나. 가목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결과, 검사필증 발행일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 · 비치하고, 이를 출고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할 것
20.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검사를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킬고 있다고 되었다. 만매입사 또는 임대업사도부터 검사들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가.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발행할 것
나. 검사필증의 발행 절차・방법, 회신기간,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지시 사항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무역 추진이 장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무역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 부모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 1호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20. 4. 13.> 지오의 사망을 보고하지 아니일 수 있다.<개정 2020. 4. 13.>
1. 해당 연도의 의료기기 수입실적
2. 의료기기의 수입 중단사유, 중단량 및 중단일정(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의료기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제36조(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 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다만, 제46조의2에 따른 경미한 변경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 및 주소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적을 것
3.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제46조의2에 따라 경미한 변경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 수리한 내역을 포함한다)을 문서로 통보

	할 것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 리체계를 유지할 것
	리체계를 유지할 것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① 제조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품 2021. 7. 20., 2023. 8.8.>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① 제조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측 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	
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언자드"이라 하	
TAN COOK OF THE TANK OF THE TENT OF THE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	
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	
내역에 관안 시술모고서들 삭성아면 모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등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업무를 위탁(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족신 업무를 다른 의료기기 판족영업자 에게 다시 위탈하는 경우를 포한하다	
② 제조업자등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업무를 위탁(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촉진업무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성 2021. 7. 20., 2023. 8. 8.> ② 제조업자등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업무를 위탁(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촉진 업무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각각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 런 장부 및 근거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면 장부 및 근거 자료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개정 2021. 7. 20., 2023. 8. 8. > ④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기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공포하여야 하다 시설	
한다.<개정 2021. 7. 20., 2023. 8. 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등에 대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반에 따	
라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4) 보건복지부정단는 세요합자등에 내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0., 2023. 8. 8.>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와 관련된 업무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학을 하고 있다.<신설 2021. 7. 20.,	
(5) 보건폭시부상판은 세1양에 따른 중 개와 관련된 업무와 제3항에 따른 실태	
조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2023. 0. 0.>	
[본조신설 2016. 12. 2.]	

제14조(폐업・휴업 등의 신고) ① 제조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 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1.>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 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신고인에게 동시아여야 안나.<선실 2018. 12. 1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 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제28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4조에 따라 제조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참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지, 휴업한 자가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를 자라 사업재개의 신고를 자라 시골를 가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 나다, 해당는 경우에는 별지 제조업허가증과 모든 이 경우 : 제조업허가증과 모든 이 경우 : 제조업허가증과 모든 이 경우 : 제조업허가증 가증 또는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휴업의 경우 : 제조업허가증 입의 기종 또는 인증서를 받이 하려는 때에는 별된 지원 기종 모든 이 하려는 때에는 별된 기계 32호서식의 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된 기계 32호서식의 수보에 따른 서류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기를 함께 첨부해 제조소의 소재지에 집 시고를 함께 첨부해 제조소의 소재지에 지원하다는 이 경우 지방식품의 함께 점부하다는 이 경우 지방식품의 함께 점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다. 이 경우지방식을 함께 점부해야 한다. 이 경우지방식을 함께 점부해야 한다. 이 경우지방식자를 함께 점부해 제조소의 소재자에게 등 기를 함께 점부해 제조소의 수 기를 함께 점부해 대무서장에게 송부다 기를 함께 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 4. 13.>

이하 이 조에서 같나)해야 한나.<신설 2020. 4. 13.>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대장에,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 가대장・허가증에 각각 그 내용을 적어 야 한다.<개정 2020. 4. 13.> ④ 제조소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휴업・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4. 13.>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수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한다.<개정 2020. 4. 13., 2021. 6. 2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수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

	하고 수리업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하고 수리업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1. 6. 24.>
	사항을 석어야 한나.<개성 2021. 6. 24.> 1. 신고수리번호 및 수리연월일 2. 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 3. 수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수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수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신고증을 첨부하여수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근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④ 법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는 별표 5와같다. ⑤ 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14조에 따라 소리업자가 폐업하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4. 수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새시) ③ 수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변경 시고서(전자무서로 된 시고서를 포함하
	다)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전자문
	서들 포암안나)와 신고증을 섬무아여 수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지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일
	경우에는 새로운 소새시들 관알아는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
	입의 신고를 아더는 사가 갖추어야 아 는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는 별표 5와
	같다. ⓒ 번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리업자가 폐업하거 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함한다)에 십고증(폐업신고 시 신고증
	나 유립하는 경우에는 될지 제32모시작 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함한다)에 신고증(폐업신고 시 신고증 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을 첨
	부하여 수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하여 수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휴업한
	│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리업소의
	* 군구 * 구성성에게 제출하고, 유럽만 자가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 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하다 ~ 개정 2020 4 13
	같다.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을 첨부하여 수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휴업한자가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리업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개정 2020. 4. 13., 2021. 6. 24.>
	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고대상과 신고승에 각각 그 신고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1, 6, 24.>
	⑦ 제5항에 따른 휴업 · 폐업 신고에 교회
	전이어는 세20호세2등 중 세4등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
TIOTI A OLO!	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4. 13., 2021. 6. 24.>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장과 신고증에 각각 그 신고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1. 6. 24.> ⑦ 제5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2절 수입업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3. .<개성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 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2015. 1. 28.>

문에 따라 우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보 수입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보 수입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보 수입신고 3.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신고를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야한다.<개정 2015. 1. 28.>
④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야한다.<개정 2015. 1. 28.>
④ 제1항에 따라 수입성하가를 받으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게 따라 주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신청하여야한다.< 무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5

2015. 1. 28.>
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미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입하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 그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같은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허가"는 "수입업허가"로, "제조이증"은 "수입인증"으로, "제조신고"는 "수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입관리"로, "제조업자"로 각각본다.<개정 2014. 1. 28., 2015. 1. 28., 2016. 12. 2., 2017. 12. 19., 2024. 2. 6.>

제29조(수입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한다.

제30조(수입허가 신청 등) ① 법 제 1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제조국・제조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의 동일 제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단서의 "허가받은"은 "인증받은 "으로 본다.<개정 2018. 6. 14.> "으로 본다.<개성 2018. 6. 14.>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8. 6. 14.>

제31조(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① 법 제1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 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 야 할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표 4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시험실 또는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1의2. 비임상시험실시기관 2.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적합함을 그 드ㅡ - - - - - - - -인정받은 제조업자

제32조(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나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15., 2018. 6. 14., 2018. 12. 31., 2024 1 16 >

2024. 1. 16.>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상시 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 희료기기

의료기기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의료기기
3. 「약사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의료기기 3의2. 「약사법」제34조제2항에 따라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의약품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4.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의료기기
5.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의료기기

5. 세품개월 등 연구녹색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5의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제품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입 하는 의료기기 5의3.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에는 의료기기 5의3.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의료기기 6. 자가 사용용 또는 구호용 의료기기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의료기기 7. 삭제<2018. 12. 31.>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관리체 계, 검사성능 및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수입 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기기의 수입 절차・대상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4, 2022. 1. 법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수입업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교차 오염이나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할 것 2. 의료기기의 입출고 및 품질관리(시

|스. 의표기기의 법물과 및 품일판데(시험 기준 및 방법, 표시사항 및 포장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문서와 부속품의 보관・출하에 대한 관리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에 따라 수입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수입 및 품질검사에 관한 수입단위별 기록 및 고객 불만처 리 기록을 작성한 비치하고, 이를 수입 리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수입일부터 5년(제품 수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명에 상응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할 것 4.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멸균되었음을 검증한 후 출고할 것 5. 전기・기계 제품의 경우 전기・기계적 안전과 전자파 안전을 확보한 후 출고할 것 6. 인체에 직접・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의 경우 생물학적 안전을 확보한 후 출고할 것 7. 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할 것 가 의료기기의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델명) 모 나. 수입의료기기의 제조사명 및 제조 국; 다. 명 다. 모양 및 구조·완제품의 자가품질 관리시험규격 라. 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의료기기 용기 등에 적어야 할 사항
마. 설치방법 및 순서(설치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만 해당한다)
바. 멸균방법・멸균기준 및 멸균판정에 관한 사항(멸균 포장된 제품만 해당한다)
사. 제품표준서의 제정자 및 제정연월일(개정한 경우에는 개정자・개정연월일 및 개정사유를 적는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할 것가. 제품관리 및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나. 시험검사결과 판정 및 불합격품의처리에 관한 사항다. 시험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라. 수입의료기기 제조업자와의 연락방법 사항 항법 마. 총업원에게 수입의료기기에 대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을 정 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기록을 작성・

	110 UNBTUTION TO TO
	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의료기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 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① 의황한 한 기의 의화학한 전치장은 희귀·난고 원활한 해당 이약품안전치장은 의귀·인입도의 함에 대한 기계공으로 기기 "라고 급등이 나수 필요기기 "라고 급등이 하여 다음 '긴입도의 하이 하다'의 교로기기 "라고 급등이 하여 다음 '기기를 보고 하게 되었다. 필요이 의료기기 "라고 급등이 하여 다음 '기기를 보고 하게 되었다. 필요하는의 의료기기 "라고 그 하다 이 의를 필요하는의 이 지원이 인정관의 이 지원이 인정관의 이 기관로로 이 하게 되었다. 그 공자 지의의 없고 지원이 인정관의 이 기관 인사 그 시기 의료 기기 위로 인해 되는 의료기기 가는 의료 인사를 모르고 기기 위로 인사를 모르고 기기 되었다. 의 및 의료 기기 등 하여 되었다. 의 및 의료 하는 이 의료 이 의	제34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의료 기기의 공급 방법 제15조의2제19 의료 의료 의료 기기(이하 "희소·긴급도입 필요의료 의료기기(이하 "희소·긴급도입 필요의료기기(이하 "희소·건급도입 필요의료기기(이하 "희소 공급하려는 보는 이 하는 지금 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세)길 구니님	

제16조(수리업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제15조제2항에 따른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2020. 2. 18.> 2. 18.>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신고를 하려는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기 회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 및 조건 등에관하여 필요한 대상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리업신고"로, "제조업허가"는 "수리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리관리"로, "제조업저"는 "수리업자"로 각각 본다.<개정 2016. 12. 2, 2018. 12. 1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문설가 기상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2020. 2. 18.>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하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 또는 민원저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기간(민원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나 보이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포함한다)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에 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한다.<개정 2020. 4. 13., 2021. 6. 24. > 한다.<개정 2020. 4. 13., 2021. 6. 2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수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고 수리업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하고 수리업신 한다.<개정 2021. 6.

2021. 6, 24.>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장과 신고증에 각각 그 신고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1. 6, 24.>
⑦ 제5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 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 4. 13., 2021. 6. 24.>
	제36조(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 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의료기기를 수리하지 말 것. 다만, 제46조의2에 따른 경미한 변경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및 주소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적을 것 3.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리내역(제46조의2에 따라 경미한 변경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 수리한 내역을 포함한다)을 문서로 통보할 것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할 것
	하지 아니하다. 2. 의료기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호 및 주소를 해당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에 적을 것 3. 의료기기의 수리를 의뢰한 자에 대 하여 수리내역(제46조의2에 따라 경미 항 변경 스리를 항 경우에는 그 변경 스
제4절 판매업 및 임대업	인 단정 구디를 한 경구에는 그 단정 구 리한 내역을 포함한다)을 문서로 통보 할 것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품질관 리체계를 유지할 것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경우 2.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지기 및 의료기관 외리 장소에서 사용되는 지기 및 의료기관 외리 장소에서 사용되는 지기 및 의료기관 외리 장소에서 사용되는 지기 및 의료기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의 되는 제 1한에 따른 시고에 대하여는 제

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들 판매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 6조제1항제2호ㆍ제4호・제4호의2ㆍ제 - -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제4호·제4호의2·제5호,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허가"는 "판매업신고 또는임대업신고"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신고 또는임대업신고"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진고 또는임대업자"로 각각 본다.<개정2018. 12. 11., 2024. 10. 22.>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문수・구청장은제1항에 따른패업신고 또는임대업신고를 받거내제3항에 따른폐업신고 또는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전하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 또는민원자 지수리여부 또는민원자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 또는민원자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 또는 민원자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자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자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자 기간 내에 신고수리 하는 별자기 아니하면 지근이 연장 또는재연장된 경우에 따라 처리기간을 말한다한 것으로 보다 사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나이는음날에 신고를 부자치도지사 등등별자치시장・투별자치도지사 등를 별자치시장・무성장은 판매업자 단수 가장장은 판매업자 등을 받아 가는 무성장은 판매업자 등을 받아 있는 구성장은 판매업자 등을 받아 있는 무성장은 판매업자 등을 받아 있는 무성장은 한다는 기상 등을 받아 있는 무성장은 한다는 기상장 등을 받아 있는 무성장은 한다는 기상장은 한다는 기상 이 되었다는 기상 이 되었다는 기상 이 되었다는 기상 이 되었다는 기상에 되었다는

다음 할에 선고를 누리한 것으도 본다. . 선설 2018. 12. 11.>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판매업자 또는임대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신설 2024. 2. 6.>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제10조의2(판매업자 • 임대업자의 준수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업신고를 한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및 안전과 과려하 파매질서 유지 등에 과하 사항

인다.
1.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및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 3. 23.]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판매업소 또는임대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3., 2021. 6. 24.>

2020. 4. 13., 2021. 6. 24.>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방식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 7. 8.>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 37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고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0. 4. 13., 2024. 7. 8.>

7.8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는 에 호)

호)
3.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④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 4. 13., 2024. 7. 8.> 7. 8.>

7. 8.>
⑤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폐업신고시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을 첨부하여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한 자가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3., 2024. 7. 8.>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장과 신고증에 각각 그 신고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0. 4. 13., 2024. 7. 8.> ② 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38조(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법 제 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돔 2.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정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의료기기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환보방법과 기취야 한다.<개정 2013.

작보당입과 그 밖에 판매설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판매업자・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업자・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의료기관 종사자 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지원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이나 된다.다만, 견보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어니하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21. 7. 20., 2023. 8. 8.> 2023

)23. 8. 6. 9) 판매업자 •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된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의 된 |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 - 아니 된다. <실설 2023. 8. 8. > 파 에 조근 함에 독한 합구를 되되어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8.>
④ 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경우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판매업자 오이 라이 한대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본다. <신설 2016. 12. 2., 2021. 7. 20., 2023. 8. 8. 8.> 2023. 8. 8.>

제10조의2(판매업자 · 임대업자의 준수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업신고를 한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다. 한다. 1 의료기기

안다.
1.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및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판 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3. 23.]

제39조(판매업자 • 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품질 확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기가.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사를 의뢰하거나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것나. 가목에 따른 검사 결과 제27조제 1항제15호가목 및 제33조제1항제19호가목에 따라 발행된 검사필증을 받은의료기기만 판매하거나 임대할 것다. 가목에 따른 검사 결과 제27조제 1항제16호나목 및 제33조제1항제20호나목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킬 것으로 제1호 각목에 따른 검사의 내용 및결과, 검사필증 발행자 및 발행일, 판매또는 임대에 관한 지시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판매일부터 2년동안 보존할 것 3. 불량의료기기의 처리에 관한 기록 기록 되었다. 중인 모근될 것 3. 불량 의료기기의 처리에 관한 기록 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일 부터 1년간 보존할 것 수 기 다 보고 보는 보고 있 4. 별표 6의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 준을 준수할 것. 다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8조제 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업소의 명칭 등으로 다음 각 목에 따른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영업소의 표시와 함께 사용하지 아니할 것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표시 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표시 나.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할 것 가. 제39조제1호나목에 따른 검사필증 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 나. 오염・손상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수거・폐기를 명한 것 다.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 지 아니할 것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①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당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학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하여는 자기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하여는 자보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2. 후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10로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하여는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기계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신고의수리"로 각각 본다.<개정 2024. 10. 22.>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교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의 제 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는 "의료기기 판 촉영업자"로, "제조업허가"는 "신고의 수리"로 각각 본다.<개정 2024. 10. 22.>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8. 8.]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5로 이동<2023. 8. 8.>]	
<2023. 8. 8.>] 제18조의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18조의4(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를 위탁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 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제1절 기준 제19조(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있다.	
제2절 기재사항 및 광고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용의 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6. "의료기기"라는 표시 7. 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 7. 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 8. 식품의학 함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 외와 "재사용 금지"라는 되기 보건되고 보건되고 함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대표준 기와 "재사용 금지"라는 사실 및 첨부문서가 정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전기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기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	제4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법 제20조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거나 용기 또는 외장에 법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모델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어야한다. 2. 수출용 의료기기로서 수출 대상국의기준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은 경우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 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 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 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19.>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수있다.<개정 2017. 12. 19.>
1.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2. 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3. 인터넷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정한다)

제43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 22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1. 16.>
1. 법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품의 사용목적 3. 보관 또는 저장방법 4. 국내 제조업자가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위탁자를 말한다)와 제조자(수탁자를 말한다)의 상호와 주소 5. 낱개모음으로 한개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에는 최소단위포장에 모델명과 제조업소명 6.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본 임하여 제시하늘 위한 역을인 실시에 대한 정보 7. 의학적 치료목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종류·강도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항
8. 첨부문서의 작성연월
9.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연락처)
10. 그 밖에 의료기기의 특성 등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시험용"이라는 표시
2. 제품명 및 모델명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사용기한이있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으로 적을 수있다)
4. 보관(저장) 방법 (차더) 4. 보관(저장) 방법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위 탁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원과 국가명을 포함한다) 6. "임상시험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6. "엄청시엄용 외의 목식으로 사용일수 없음"이라는 표시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 9호의 사항을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 에 기재한 경우에는 첨부문서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1.

법제처 64

16.>

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한다.	제44조(기재사항의 표시방법) ① 법 제 23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모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사항을 적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6. 24.> 1. 한글로 적거나 한글에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한글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출용 의료기기에 수출대상국 언어로 적는 경우나.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시외국어로 적은 항목을 해당 언어로 적는 경우나.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시외국어로 적은 항목을 해당 언어로 적는 경우 기재방법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정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의 상호 등을 적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에 병행하여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 ·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소합한 수 있다. 1. 의료가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공항할수 있다. 1. 의료 1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등을 성안내, 의료 1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등을 사용하여 병기에 사용한 기를 음성안내, 무상하여 병기에 가장 보를 음성안내, 무상하여 병기에 가장 보를 위한 소 의료기기등 전자적 방법으로 위한 소 의료기기등 전자적 방법으로 기기 등을 추가하기를 위한 소 의료기기등 전자적 방법의 이를 위한 소 프리공하는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등을 자 의료기기 위하여 음성 · 영상 개발하고 프트웨어, 행위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 자항에인의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등을 참보전달 방법과 기준을 하려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게 행정적 · 기술적 지원 보전달 방법과 기술적 기원의 함입자 모든 다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라 기관 모든 다체에 위탁할 시 유성 기관 모든 다체에 위탁할 시 의를 시용하여 및 교육 · 홍보로 등에 가입되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되었고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상의 되어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적절한 당보기 기준 및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44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3조 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권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로 한다.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3015 1 28 3 고나.<개성 2015. 1. 28.>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생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는 광고들 아버서는 아니 된다.<개성 2013. 3. 23, 2015. 1. 28, 2021. 3. 23.>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 고 고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 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 한 광고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 와고 과고 · 고 광 당고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 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다. 다.
6. 삭제 < 2021. 3. 23.>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다른 내용의 광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표시・기재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법률 제17978호에 의하여 2020. 8.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함.]

제45조(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 법 제 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
2.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기취급자가고용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의 구매권유, 제품 설명 및 시연 등의 방법을 통한 광고
[전문개정 2021. 6. 24.]

제45조의3(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광고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광고심의 업무의 수행을 신고하려는 자는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1. 영 제10조의5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 영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사본
4.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율심의기구는 법 제25조의4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법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를 매분기별로 분기가 지난 후 30일 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본조신설 2021. 6. 24.]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 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2.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라디오방송
2.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호의 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옥모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때론 역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수막(懸畢幕), 단어 관한 법률」 및 교통시설 고통수 대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향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향 및 교통시설 가입하는 광고를 모함한다)되는 광고를 모함한다)되는 광고를 모함한다 이루어지는 광고를 모함한다 이루어지는 광고를 모함한다 의류에는 광고를 모함한다 등이루어지는 광고를 모함한다 의류에는 광고를 지하는 양당하는 광고를 가입하는 광고를 모함한다 의류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등을 그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 악니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광고에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3. 제1항에 따라 식이를 바이 내용되

기의 외국어 광고
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4. 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용의 정고 ④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 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 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의료기기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나

햐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8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기기광고를 하려는 경우

제10조의3(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라디오' 또는 그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

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 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 터넷 매체

더넷 배세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 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교(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字句)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광고의 문구, 도안 등의 배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으로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우
④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의료인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등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말한다.
1.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의료법」세33소에 따든 의료기관 개설자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2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 사 및 안경사 [본조신설 2021. 6. 15.]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6으로 이 동 <2021. 6. 15.>]

제10조의4(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심의기준과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한 심의방법및 절차에 따른 제4 인물

같은 조 제5명에 따라 정한 점의당합 및 절차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광고를 심의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 다.

.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에 따라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 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7 ③ <u>의</u> 심의해야

제45조의2(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5조제5항 및 영 제10조의4제4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의료기기광고 재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2. 의료기기광고 심의 및 재심의 결과통보서 사본

통보서 사본 4. 그 밖에 광고 심의를 신청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참 고 자료

-[본조신설 2021. 6. 24.]

[전문개정 2021. 3. 23.]	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되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기간 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수에는 이의신청을 한 자에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자원의기구에 통보해야한다.	
	고를'심의한'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후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2.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② 자율심의기구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에 적용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의기구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및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듄

다.
④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2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 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⑥ 자율심의기구가 제25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 행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4(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심의기준과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한 심의방법및 절차에 따른다.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 취지 및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광고를 심의한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

·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

지출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지금 제출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자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자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자유와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 없는 경우에는 외시청을 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고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10조의5(자율심의기구의 구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원 또는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 하는 의료 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7. 19.> 2022

개성 2022. 7. 19.>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 한 자

를 한 자
4. 판매업자
5. 임대업자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을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기기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제45조의3(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광고심의 업무의 수행을 신고하려는 자는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2022. 1. 21.> 2022

2022. 1. 21.>
1. 영 제10조의5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 영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사본
4.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율심의기구는 법 제25조의4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법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를 매분기별로 분기가 지난 후 30일 이내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본조신설 2021. 6. 24.]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사무실 생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의 수행을 신고하려는기관 또는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신고받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5조의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위원회의 무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에서 라람을 각각 1명이 되도록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수도록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수도록 함하되,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도록 함하되,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도록 함하되,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도록 함하되,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도로 감하는 사람의 자연한다. 1.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따른 의사회 ·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로서 같은 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의 장이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회의 장이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되의 장이추천하는 사람 1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이 하의 장이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의료기기의 안전등록한 추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추된 무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추된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의료기기의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의료기기의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계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어에 일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인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인다.		

제25조이4/이르기기과고 ㅁ니티리 및	제45조의3(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
제25조의4(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에게 제출에야 한다. 제36조대 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대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1. 영 제10조의5제3항제1호에 따른 전 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 영 제10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전 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사본 4.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율심의기구는 법 제25조의4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를 매 본기별로 분기가 지난 후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제25조의5(봉함)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1.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2.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본조신설 2021. 7. 20.]	제45조의4(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 ① 법제2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1. 인제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중 멸균 포장된 제품 2.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의료 기기 가. 주사기(멸균 포장된 제품만 해당한다) 나. 주사침(멸균 포장된 제품만 해당한다) 나. 주사침(멸균 포장된 제품만 해당한다) 다. 봉합사라. 창상피복재(멸균 포장된 제품만 해당한다) 마. 콘택트렌즈 바. 그 밖에 멸균 포장된 제품만 해당한다) 마. 콘택트렌즈 바. 그 밖에 멸균 포장된 제품으로서 유통할 때 봉함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 ② 법제25조의5에 따른 봉함은 용기 또는 포장의 봉함을 뜯지 않고는 그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3절 취급	[L+L2 2022. 1. 21.]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람회・전람회・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1. 28.>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7. 12. 19.>

19.>
1.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2.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하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물질 또는 변질되거나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3. 그 밖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폐기ㆍ사용중지ㆍ허가취소 등을 명한의료기기 의료기기

의료기기 ③ 수리업자는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 제2항・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성능, 구조, 정격(定格),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8, 2018. <u>3.</u> 13

4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 · 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28 · 세0성에 띠다 여가 로든 현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 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자기 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12조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2.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이자신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변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5)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료기기를 수리・판매 또는 임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료기기를 수리 한다 때로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 28.>

1. 제6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2항 · 제6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

제46조(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전시할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진열하려는 자는 미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염하려는 자는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작동시키는 행위, 신고한 내용에 관한 동보물을 부착하거 나 비치하는 행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기를 통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열하거나 사용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허용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어용된 앵커 외의 엉워를 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용한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를 제10조제4호및 제32조제1항제5호의2・제5호의3에따른 의료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 6 24 > 2021. 6.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 방법· 절차, 승인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개정 2021. 6. 24.>

제46조의2(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 의료기기 수리업자는 법 제26조제 3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관을 변경하는 수리를 할 수 있다. 1. 의료기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외장의 색상, 재질 등을 변경하는수리 2. 의료기기의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었는 거치대 소잔이 바퀴 등 이과이 미

ㅜ니 2. 의료기기의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치대, 손잡이, 바퀴 등 외관의 모 양, 구조 등을 변경하는 수리 [본조신설 2018. 6. 14.]

제47조(의료기기의 변조·개조 허용 범위)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변조 또는 개조할수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기의 고유한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있는 범위에서 변조 또는 개조하여야한다.
1. 「의료법」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 「의료법」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장비

3. 그 밖에 변조 또는 개조하여도 안전 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의료기기 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의료기기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 또는 수리된 의료기기 2.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의료기기 ⑥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0조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임상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3. 23.> ⑦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시험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인증을 하거나 신고를 받기 전이나 제33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한 경우에는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시험검사를 「식품・의약품분야시험 수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7. 30.> ③ 삭제<2013. 7. 30.> ④ 삭제<2013. 7. 30.> ⑤ 삭제<2013. 7. 30.> [제목개정 2013. 7. 30.]	

(3단비교표)「의료기기법」

제4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1 체 128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39호서식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를 포함한다)에 다음 점부하여 수다. 1. 품질관리심사기관 열리 한 다음을 말한 당시 수 업무 범위에 관하 성이 무리 가격 및 경력을 말한 다음을 지질심과 이 이 나비에 경하는 지정서 1 분이 원리 가격 되었다. 1 품질관리심사기관 조직 및 2 학 수 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가격 및 3 품질심사업무 범위에 관하 성제 1 분이 가격 등이 가격 및 3 품질심사업무 범위에 관하 성제 1 분이 가려 당시 기관 기공을 하는 비경에 관하 성이 무리 가정하는 경우에는 비경에 관하 성이 가관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기정 제 2항에 따라 지정서 (전자)관 및 보지정서의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 기관 및 보지정서를 발라하여 하는 자료(전자)관 기관 기관사이 기관 기관 기관 대표가 기원 기관 기관 기관 대표가 기원 기관 기관 기관 등이 기존 사람이 가관 기관 대표가 기관 대표가 기관 대표가 기관 대표가 기관 기관 등이 전체 1 분이 가관 기관 기관 등이 전체 1 분이 전체 1 분이 전체 2 분이 전체 3 분이 의로 기기관 등이 전체 2 분이 전체 3 분이 기준을 지킬 것 4 분이 이 전을 가고 받다 기관 점질관리심사기관 및 관리 시하는 기관에 지정질관리심사기관 및 관리 시하는 기관에 지정질관리심사기관 및 가관에 가관한 기관을 가고 발급 시장이 정하여 모든 품일 건시 4 번에 2 사기관이 지정질관리심사기관 및 2 분이 전체 3 가관에 대하여 전체 2 일 수 있다. 4 번째 2 장은 전체 3 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체 2 일 수 있다. 4 번째 2 장은 전체 3 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체 2 일 수 있다. 4 반대에 대하여 전체 2 일 수 있다. 4 반대에 대하여 전체 3 등이 는 기관에 대하여 전체 2 일 수 있다. 4 반대에 대하여 전체 3 등이 는 기관에 대하여 전체 3 등이 는 지킬 2 시간에 대하여 전체 3 등이 는 지킬 2 수 있다.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과 제조 및 품질 관리체계심사를 할 수 있다.<개청 2013. 3. 23., 2015. 1. 28.>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제조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생산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수입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4. 수입업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 2015. 문에 따른 수입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4. 수입업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및 제조소에 대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수입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인상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이를 가장할 수행할 기관(이하 "품질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1. 28.>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관리체계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1. 28.>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관리체계 심사에 필요한 대에는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한 때에는 품질관리심사결과서 심사를 한 때에는 품질관리심사 기관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한 때에는 품질관리체계 심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정 2013. 3. 23., 2015. 1. 28.> 집 제1한 무지 제2회사 사기관이 되었다. 정 2013. 3. 23., 2015. 1.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요 건과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을 지킬 것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심 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절 차・방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 법제처 74

제5장 관리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에서 사용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이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는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2.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한다기는 기의 지정기준 한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4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 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가로서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가. 이식형 심장 박동기 전극다. 혼합재질 인공심장 판막다. 이식형 심장 학동기 전극다. 혼합재질 인공심장 판막다. 비생체재질 인공심장 판막다. 생체재질 인공심장 판막다. 생체재질 인공심장 판막다. 생물의 이 시청 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의료기기 중 의료기기가 있어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가 그 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재학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하여고시하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 또는 수입 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가증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취급자"라 한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하 이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종리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취급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때한 수리 내용 등에 대한 기록 2. 사용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또는 수리 내용 등에 대한 기록 2. 사용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록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경우에는 취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등을 열 위하여 필요한 가적인 자료의 제출 등을 열 위하여 의연 약품안전처장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장의 자료제출들을 열 당한 사장의 자료에 가부할 수 있는 1. 기록의 작성과 보존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출 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및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 기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적관리대 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또는 사용자의 기록 및 그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6. 24.>

제31조(부작용 관리) ①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급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평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한대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한대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의료기기가 처음 일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일게 기어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 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 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리기기를 하여야한다.이 경우 제조업자 및 우리업자는 인체에 미치는 사실을 일리기기를 하여야한다.이 경우 제조업자 및 우리하여 등리령으로 인체에 되는 바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입업자는 인체에 미치는 사람의 등을 입업자는 인체에 미치는 사람의 우리하여야한다.

획을 공포아노들 으로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5. 1. 28.>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그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한다. <신설 2015. 1. 28.>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 장은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제조업자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7. 12. 19.>

2017. 12. 19.>
⑦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내용, 제2항에 따른 회수기준, 회수절차 • 회수방법 및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사항과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제4항에 따른 통보의 기준 • 절차 • 방법,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 절차 • 방법 및 증명 자료 제출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2021. 7. 20.>

제51조(부작용 보고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고관련 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이 경우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부터 8일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이상사례가 나타난 경우 15일이내 이내

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 한 경우

다.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다.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다. 전선식 기영 또는 이성을 조대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 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작 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릴 때에는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 법으로 한다.

집으로 안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환자에게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린 의료기관 개설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자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작용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52조(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는 수리・판매 또는 임대하는 의료기기가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의료기기(이하 "회수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의 수리・판매 또는 임대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회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자는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임대한 의료기기 중 회수대상 의료기기로의심되는 의료기기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다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2.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일어나지 아니하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제2항 각 호에 당하면 즉시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를 장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

43호서식의 회수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회수의무자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의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 2019. 12. 23.> 삭제<2018. 12. 31.> 31., 1. 삭제 <2018. 12. 31.>
2. 삭제 <2018. 12. 31.>
2. 삭제 <2018. 12. 31.>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수의무자가 제2항제3호의 의료기기로서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5. 회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19. 6. 12., 2019. 12. 23.>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임대인별 임대량・임대일 등의 기록 2. 제53조제3항에 따라 통보할 회수계획통보자 고 획통보서 3. 삭제 < 2018. 12. 31.> 3. 삭제 < 2018. 12. 31.>
4.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및 개설자성명 등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정보⑥ 회수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회수 종료 예정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야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회수기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8. 12. 31.>
1. 제2항제1호의 의료기기: 회수를 시 다.<개정 2018. 12. 31.>
1. 제2항제1호의 의료기기: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료기기: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수의무자에게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등 성을 구 있다.<개성 2018. 12. 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기 위해 정도의 평가,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신설 2018. 12. 31.>

제53조(회수계획의 공표 등) ① 회수의 무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회수계획 공표 명령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그 회수계획을 공표하여야 한 다

1. 제52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기: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또는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대중매체(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사용방법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매체를 포함한다)에 공고
2. 제52조제2항제2호의 의료기기: 의학
・의공학 전문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매체에 공고
3. 제52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기: 회수
의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매체에 공고
② 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매체에 공고
② 기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회수의
무자의 상호,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
사용기한 • 유효기한 및 회수사유를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③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이하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라 한다)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으면, 팽하수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는 회수증료
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반품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회수의
나 등이 작제<2018. 6. 1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대상 의 구시에게 응구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8. 6. 1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등에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기기의 되답지 중에게 로기되는 그 도그할 수 있다.
②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12. 31.> [총리령 제1181호(2015, 7, 29.) 제5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5월 10일 까지 유효함]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 매업자 · 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 기 판매업자 · 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 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 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유 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54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신설 2024. 1. 16., 2024. 7.

8.>
1. 영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3등급 · 4등급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

フ

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말일까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

식품의작품안전서상에게 세울해야 한다.<개정 2024. 1.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공급내역의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

그리 고고데용에서 제되를 두 썼다. 전 설 2024. 1. 16.> [본조신설 2019. 10. 22.] [종전 제54조의2는 제54조의3으로 이 <2019. 10. 22.>1

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시다"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고 시조업자등은 의료기기를 체계적 ·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등록 · 관리함에 있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54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신설 2024. 1. 16., 2024. 7.

8.>
1. 영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3등급 · 4등급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

フ

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말일까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6 > 2024. 1.

다.<개성 2024.1.1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 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공급내 역의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

설 2024. 1. 16.> [본조신설 2019. 10. 22.] [종전 제54조의2는 제54조의3으로 이 동 <2019. 10. 22.>]

제54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의료기기정보등"이라 한다)는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2. 의료기기 제품에 관한 정보(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보암안다)
3.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외국제조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②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정 보등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7의2와 같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정보등의 등록 및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
2. 의료기기 허가 · 인증 · 신고 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 제공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정보등의 대상 · 범위, 의료기기정보등의 제공 방법 등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5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 3은 제54조의4로 이동 <2019. 10. 22.>] 제31조의4(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 ·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제공 및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지정(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라고한다)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기취 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제출받은 정무를 여부를 확인하는 제 필요한 경우 지분이 전무를 작업되의 제공을 요이에따라 전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장면 무사료 또는 정보의 제공하면 대하여 보고하면 가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의료기기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작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0조의6(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한다 (.S/II & 2016, 3. 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 4제1항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 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원에 나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나 | <개정 2018. 9. 11.> |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유통 |정보 및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기기통 |합정보"라 한다)의 수집・조사・가공・ |이용 및 제공 | 2.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 | 기통합정보시스템의 항영 | 기의 등록되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3.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능독된의료기기 표준코드 관리 4. 의료기기통합정보 및 의료기기 표준 코드의 제출・등록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지원 5. 법 제31조의3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의료기기통합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6. 법 제31조의3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의료기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의료기 의 무답 및 시행
6. 법 제31조의3에 따라 의료기기통합 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의료기 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교 육 및 홍보 7. 그 밖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관 리 및 기술지원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플 업무 |업무 |[본조신설 2017. 8. 1.] |[제10조의3에서 이동 <2021. 6. 15.>]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①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물 발견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23.8. 16.>

④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방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54조의4(이물 보고의 기준 • 대상 및절차)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의료기기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이물(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u>

|같나. 1. 금속, 플라스틱 또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파편 등 의료기기의 정상적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직・간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2. 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사용 조수 있는 중 수 있는

· 간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물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물질로서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위해 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의료기기취급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이물 발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2019. 10. 22

21., 2024. 3. 8.>
1.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 명령
2. 법 제34조에 따른 판매중지・회수
・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나 공표 명령
3.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이물 발견 보고의 절차・방법과 이물 혼입 조사의 절차・방법및관련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54조의5(이물 발견 사실 등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4조의 4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물이 발견된 사실, 그 조사 결과 및 조 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

제6장 감독	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1. 이물 혼입된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이물이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 될 수 있는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등 국 민건강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이물 발견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 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물 발견 사실 등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본조신설 2024. 3. 8.]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 치시장 • 특별자치도기사 • 시작 • 구수	제55조(수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 2호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거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 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기의 위해방지・품질관리, 판매질서의 유지 또는 의료기기 관련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감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의료기기취급자 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임상시험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수탁 기관・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12. 19., 2018. 12. 11., 2023. 8. 8.> 1.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공장・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임상시험기관・ 기술문서심사기관・임상시험기관・ 비임상시험기관 의료기기 관측영업자, 제15조의2제 2항에 따른 수탈 기관・단체 기 발에 다른 수탈 기관・단체 기 발에 되었어 따른 수탈 기관・단체 기 발에 다른 수탈 기관・단체 기 발에 다른 수탈 기관・단체 기 발에 다른 수탈 기관・단체 기 발에 되었다면 기관 보기 반에 기관 보기 반에 기관 기 발에 기관 기 발에 기관 기관 및	서인에게 말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의료기기에 다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또는 비임상
의묘기기취급자 또는 의묘기기 기둘는 서심사기관・임상시험기관・비임상시 험실시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 기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12. 19., 2018.	제56조(의료기기감시원증) 법 제32조제 2항(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공 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12. 11., 2023. 8. 8. > 1.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공 장・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의료기 기술문서심사기관・임상시험기관・	
지수 있고 모든 점보다 자구도, 의료가 기술문서심사기관 · 임상시험기관 · 비임상시험실시기관 · 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 2항에 따른 수탁 기관 · 단체, 그 밖에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행위 2.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고 있었다는 이르기기 또는 사	
인 결군을 있다. 경기	
에 이 교기도 그 마시는 기표기가 모든 시 험이나 품질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최소량만 수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질문・	
수거들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기 또는 시험이나 품질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최소량만 수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질문・수거를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직무의 범위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32조의2(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다에 학당하는 경우 이 나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입 기기의 제조업자,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의료기기의 제조업이 교리가 또는 해외제조소(의료기기의 제조(의료기기의 제조(의료기기의 제조(의료기기의 제조(의료기기의 제조(의료기기의 자료 함의를 하는 같다)의 관리를 하는 감다 이 함께 되었다. 이하 같다 이하 같다의 의료하여 있다. 하의에서 위탁 조되거나 일의 위하인 의료 자료 하는 한 이 의료 이 대한전 기기는에 함께 외에서 위탁 조되거나 일의 위하인 의료 하는 경우에 대한건 이 의료 이 대한건 기기는 이 함께 외에서 위탁 조되 기기 는데 함께 이 의료 이 의료 하다 이 의료 이 의료 하는 경우에 되었다. 이 의정하는 경우 전치로 이 인정하는 공안전 기기는 대의 기기는 이 일요하다고 우시를 하는 함께 외제조 수의 의료 하다 함께 외제조 수의 의료 하는 등의 작가 되었다. 의료기기 수업 업자, 하의 제조 중단 등의 약품 이 의료 가 의료 기기 수업 이 의료 가 의료 기기 수업 이 의료 가 의료 기기 수업 이 기기는 이 기의 되는 의 주차에 위해 외제조 중단 등의 약품 정부가 원인을 기의 가 는 이 경우에는 하여 있다. 의료기기 수업 당한 기의 의료 이 의료 가 있는 다 이 경우에는 이 기의로 당하는 이 경우에는 한 기의로 당하는 이 기의로 장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56조의2(현지실사 절차 및 수입 중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때 특희 32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름할 대시한 1 한다)에는 이료기기는 이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는 인접지실사(이하 "현지실사"라 한다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전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상이 관한 대시 32조의 1 한다는 일본 이 한다는 일본 이 한다는 이 전 등이 되었다는 이 지원 보다 한다는 일본 이 대시 32조의 1 한다는 이 에는 하 일본 때 이 제조소의 2제2항에 다 의견을 지하다 의료기기 수출자 일본 때 이 제조소의 2제2항에 다 의견을 지하다 의료기기 수출자 일자 하 이 의견을 지하다 의료기기 수출자 일자 함한다 의료기기 수출자 일자 보다는 모조서 등이 가 조차를 받다는 기계 됐다는 및 조차를 되기 부의 하 등이나 공표 기 또는 및 조차에 따른 한다. (전자 전 2022. 1. 21. > 1. 학명 보다 기 또는 의로기기 수출자 문 문 한다. (전자 전 2022. 1. 21. > 1. 학명 모함한다 의료기기 조차를 하다 의료기기 조차를 하다 의료기기 조차를 하 바이 바다 의료기기 조차를 하다 등이나 공표 3. 법 제35조에 따른 한다 전체 제상의 공자기를 해제할 때에는 의료기기 수출제 일자 함한다 의료기기 수출제 일자 함한다 의료기기 수출제에 바라 상려를 하다 되었다. 의자 또는 및 하 위에 바라 수입 지원자 및 하 위에 바라 사유를 하다 있다. 의자 또는 사유를 하다 되었다. 의자 또는 의로 에 제외 조치를 해제할 때에는 가 문서를 하다 있다. 의로 하 되었다. 의로 하는 다 되었다. 의로 하는 이라 되었다. 의로 하는 이라 되었다. 의로 하는 이라 되었다. 의로 하는 의로 하는 되었다. 의로
제33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해당 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위해의 정도에 따라 판매중지, 회는 발법으로 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것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수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2021. 8. 17.>
1.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 2.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 건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 2.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끝수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의 내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물품의 밖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불품을 위하게 하거나 봉함 또는 봉인다. 이경우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위해 정 2013 l3. 3. 23., 2017. 12. 19.>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위해 정 ③ 제18에 떠는 되표기기의 뒤에 등 도에 따른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기준과 방법,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안 2012 2023 2021 으로 정한다.<개 정 2013. 3. 23., 2021. 8. 17.> [제목개정 2021. 8. 17.]

제54조(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등)
① 회수의무자는 회수하거나 반품받은의료기기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회수평가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3.>② 회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6호서식의 폐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고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고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참관 하에 환경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별지 제47호서식의폐기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 12. 23., 2020. 4. 13., 2020. 12. 31., 2021. 6. 24.> 1. 별지 제43호서식의 회수계획서 사보

별지 제43호서식의 회수계획서 사

별지 제44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 본

본
③ 회수의무자는 회수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회수종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회수의무자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회수의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회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3.>

별지 제44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 본 2.

별지 제45호서식의 회수평가보고서 사본

자근 3.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확인서 사 본(폐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 에 따른 회수종료보고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

|각 오에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한다. | 이 한다. | 1. 회수계획서에 따라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회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회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릴 것 | 이루어지지 아니

로 알릴 것 로 알릴 것 2.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 자에게 회수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

호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가 완료되면 그 사실을 회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6. 24.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 등의 조치, 회수 평가 보고서 작성, 회수 종료 보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12. 31.>

	제57조(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가 제52조제2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회수의무자에게해당 의료기기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하고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0. 4. 13., 2022. 1. 21.>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2. 31., 2022. 1. 21.> [제목개정 2022. 1. 21.]
제35조(사용중지명령 등)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 관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 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제33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아이다.	
제3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2제1항(제15조제6항 또는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제15조제6항 또는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3. 8. 8.]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등)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 구입업자 이 관한 수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시장 · 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시장 · 트별자치도지사 · 시장 · 문별자치도지사 · 신의 주리의 취소 · 수입 · 판매의 제조 · 수입의 취소 · 수입의 취조 · 수입의 취조 · 수입의 취조 · 수입의 부모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제1호의 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이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사이는 다만, 제1호의 부터 제1호의 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 사정 2013 · 3 · 23 · 2015 · 1 · 28 · 2016 · 12 · 2 · 2017 · 12 · 19 · 2018 · 12 · 11 · 2020 · 2 · 18 · 2021 · 7 · 20 · 2021 · 8 · 17 · 2023 · 8 · 8 · 2024 · 10 · 22 · 1 · 제6조제1항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 제4호 · 제4호의 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성수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 제4호 · 제4호 · 전의 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의를 양도한 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를 양도한 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를 양도한 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를 양도한 이 1의 전우에는 기의 자기한 · 제2항, 제12조제1항이 다리 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에 다리 준용되는 경우를 받거나 신고 · 변경신고를 한 경임 기가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가 · 변경허가 또는 인증를 받거나 신고 · 변경신고를 한 경임 기기 판매를 하가 · 변경허가 또는 인증를 받거나 신고 · 변경인공 · 변경인우 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이 반면증을 받거나 신고 · 변경인공 · 변경인유 · 변경인유 · 변경이 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이 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다른 하가 · 변경하가 또는 인증를 반 강의 기기 판매 등 한 병경이 나라 된 기기 판매 등 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이 한 방법의 기기 판매 등 한 병경이 나라 한 보급 된 기기 한 보급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이 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바를 수이 한 방법의 기기 한 의 하다 한 학점 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바를 수이 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합의 제10조제1합 -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5인을 받은 경우 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경 1의3. 주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제조 • 수입한 경우 3. 제6조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또는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영구 3의2. 제6조제7항(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6조의2제4항(제15조제6항에 품질책임사들 구시 시고 3의3. 제6조의2제4항(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책임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를 위반하여 시판 후 조사를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 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0일 이게 16 > 21., 2024. 1. 16.>
1.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소프트웨어만으로 개발・제조되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신고한 의료기기(이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 한다)의 제조소는 제외한다]
2.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M3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제

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조사 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기적 으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5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5. 제8조의2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 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5의6.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경우 제 로 급 공 구 5의7.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8.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보존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 우 6. 제9조를 위반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평가 결과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 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의료기기를 수입 한 경우 8.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 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용 8. 세12소세1항(세15소세6항, 세16소 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또는 생산관리・수입관리・수리관리에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억2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전단 군구사당을 시키시 아니만 경우 9의2.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 공하 때 공한 때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질서 -진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기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기준에 미달한 경우 11의3.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촉진업무 종사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경우 대의4. 세18소의4세1양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한 사실을 해당 업무를 위탁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지 만나한 경우 트리의 역되안 경우 11의5.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경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경 따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조품목의 외관, 포장재료, 포장단위 등의 변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을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2018. 6. 14.> 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성 2018. 6. 1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12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변경을 명하여 이를 변경한 경우로한정한다.<개정 2022. 1. 21.> 한정한다.<개정 2022. 1. 21.>
1. 법 제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변경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술문서 또는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변경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개발의 등의 시판 후 조사 결과 검토에 따른 호소 조치 교기가 등의 시한 후 조차 결과 검토에 따른 후속 조치 4. 법 제9조에 따른 재평가 5. 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 변경 6. 법 제31조에 따른 부작용 보고에 따른 조치 는 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정보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8, 6, 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인증 • 변경신고의기준, 절차, 자료의 요건, 면제범위 및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은 별표 9와 같다.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	
ㅁ셔에 ㅍ시하기 저ㅇ 겨ㅇ	
1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14의2.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의료기 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14의2.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의료기	
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아니하고	
기의 중기나 포장들 중입에서 어디어꼬	
판매안 경구	
14의3.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	
키지 아니한 경우	
14의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14의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작성・보존・제출한 경우	
그 15 세3이소세기안을 얼마하며 사로 세	
축 등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15.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6 세31소세1하는 이바하며 모사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ㄹ ㅠ시에서 에디틴 OT 17 - 제21ㅈ제2하은 이바치여 히스 ㄸ	
10. 세31도세18을 되면하여 구극증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경우	
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기나 외우계획을 모고아지 아니안 경우	
또는 같은 소 세3양을 위만하면 외수계	
획의 공표 병령에 따르시 아니안 경우	
17의2. 세31조의2세1항을 위반하여 의	
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	
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계 획의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의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 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7의3.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	
17의3.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	
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	
하지 아니하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	
음 위반하여 이렇기기통한정보과리기	
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T = T T 이시 이익한 6구 10 제21조이드로 이바하여 이므 바거	
10. 제기오의)글 귀단어서 이글 글산	
18.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안 경우 40 - 제22포제4회에 따르 관계 고묘이	
119 세월수세1양에 따는 관계 공무원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 취급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검사 등이 결과 국	
미보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칙 우려가	
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1.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	
21.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	
른 각종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이2 제43조이6은 위반하여 보험 등	
에 가인하지 아니하 경으	
22.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그렇게 이트 이끌게게나 그 서투이다	
염려가 있는 의료기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의료	
열려가 있는 의료기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의료 기기를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 23.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2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기기를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 23.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현네인 경수 32 - 이 버에 따라 취기를 바꾸다 보고	
를 한 소재치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는 경우	
24. 업무성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2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허가 등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등 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갱신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등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등	
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갱진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	
니하 경우	
기 · · · · · · · · · · · · · · · · · · ·	
이 기 에 이 기 이 기 리 기 다 다 이 그는 이 하 기 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ㅠㅛㅇㄹ ㅊㅜ시 ㅈ인 ㅎㅜ긴 예정안니 \이 겨ㅇ ㄱ 제ㅈ어지 ㄸㄴ ㅅ이어피에	
)의 경우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쉐, 파일약호수 [항고, 글 뒤툢각기일 원	
<mark>쟂료나 구조 등을 변경한면 그 헛가, 인</mark>	
□ 2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갱신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5・제6호(재평가 결과 안전성 또는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료기기의 원재료나 구조 등을 변경하면 그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고 있성하는 때에는 그 변경반을 명할	
의5 · 세0오(새평가 결과 인신경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료기기의 원 재료나 구조 등을 변경하면 그 허가, 인 증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 28., 2018. 12.	

11., 2021. 8. 17.>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있다.<개정 2013. 3.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8호의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3. 23.> [2021. 3. 23. 법률 제17978호에 의하여헌법재판소에서 2020. 8. 28. 위헌 결정된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은 삭제함]	
제3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 4제1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실시기관, 기술문서심사기관, 임상 시험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 질관리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 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5. 12. 29., 2021. 7. 20.>	제58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은 별표 9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교육수료증,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임 상시험결과보고서, 비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거나 품질관리심사결 과서를 작성 또는 보고한 경우 3.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4제2항, 제 10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 28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2제6항, 제6조의4제3항, 제10조제5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3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2. 19,,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

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2. 19.>

2013. 3. 23., 2017. 12. 19.>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관한 자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2017. 12. 19,, 2020. 3. 24.>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징수기관이 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 3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1. 10. 7., 2013. 3. 23., 2021. 1. 5.>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의료기기취급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 10. 7., 2013. 3. 23., 2019. 5. 21.>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7., 2013. 3. 23., 2019. 5. 21., 2022. 1.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 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5. 21.> ④ 삭제<2021. 9. 24.>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 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7., 2013. 3. 23., 2019. 5. 21.> 5. 2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6. 30., 2019. 5. 21., 2020. 3. 21 등에 정 20 24.> 2015. 6. 30., 2019. 5. 21., 2020. 3.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 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 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 정 2019. 5. 21.> [본조신설 2007. 7. 3.] | 【본조신설 2007. 7. 3.]

제11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8조의 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 판매량은 판매기간 중 출하량에서 회수・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며,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판매기간별로 각각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인증・신고 수리의 취소처분, 품목류 또는품목의 제조・수입・판매 금지처분, 영업소의 폐쇄명령,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 또는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금을 무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인증・변경인 증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제6조제6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 등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제6조제6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 무슨 및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6조(제6항과 제7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생신을 받은 이 막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8조의 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8.] 한다. 조신설 2021. 7. 20.] 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 <2021. 7. 20.>

제38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 및 제 3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 분 대상자와 의료기기의 명칭 등 처분 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8조의 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의료기기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의료기기의 제품명 3. 처분 대상 업종명 4. 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5.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6.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본조신설 2019. 5. 21.]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9. 5. 21.>]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치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제37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7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40조(의료기기 감시원) ① 제32조제 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기기 감시원을 둔다.<개정 2013. 3. 23.,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59조(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① 법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 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기도지사·시장·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21. 6. 24.> 1.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의는 이와·치의학·학의를 졸업한 자 모이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기의학·학의를 졸업한 자 의료기기 감시원의 작무범위는 다이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의료기기 감시원의 작무범위는 다양 기본에 따른다.<개정 2017. 5. 1. 보건의료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018. 12. 31, 2021. 6. 24.> 1.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기 전원이 공사한 경험이 있는 자의학자 보건의료 기기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기 자기 원이 조사가 필요하거나 제동호 및 제 3호에 따른 직무를 할 수 있다. 기술문서심사기관, 품질관리심사기관, 바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거하게사 기술문서심사기관, 등 업무상 의료기기 지장에 따른 지장시원에 한한다) 2. 삭제<2021. 6. 24.> 3. 특별자치오의 등이 있다. 다양품악전청 소속 의료기기 가 되었다 및 가기 라시원대업자, 「의료기관 사이 막는 등별자치오의 기 감시원대업자, 「의료기관 사이 막는 등별자기 가 되었다 및 기의로기관 및 기의로기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한 의료기기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의 회원 및 직원 또는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자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이 행하는 의료기기 등 감시 및 수거 원이 행하는 의료기기 등 감시 및 수거 한 경사 지원
2. 유통 중인 의료기기가 표시 • 기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기준에 취임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 밖에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자의료기기감시원이 제2항 기준에 구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기준에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투급수 직무성장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구성장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구성장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다는 등 별시장 신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 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다음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해촉하여야한다.
1. 추천한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와을 하거나 권한을 하여 부정한 항위를 하거나 권한을 자기 관한하게 된 경우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경우 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감시원이 제2항제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리 사용되어 자연을 받아야한다.
⑤ 소비자의로 가기감시원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직이야한다. 한다 어야 한다 이야 한다. ⑧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직 무 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지격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달음 각호의 언는 하나에 해당하 는 차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 촉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 2021. 6. 24.>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의료기기 관련 업체 또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협회・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5.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2.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물품 폐기, 봉함 또는 봉인 등의 지 원 원
2.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안전한 의료기기관리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
④ 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료기기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3, 2021. 6. 24.>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3., 2021. 6. 24.>
⑤ 법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판매업소 또는 임대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및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50호의2서식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15.]

[본조신설 2015. 1<u>2. 29.]</u> 제7장 보칙 제6조(제조인증의 절차) ①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 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②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인증을 신청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제조인증대장에 다음 건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8. 6. 14.> 1. 인증변호 및 인증연월일 모델명) 3 제1항에 따른 제조인증을 일 모델명) 3 제1항에 따른 제조인증을 포함한다 및 인증연원일 기준이 하다 및 인증연원일 및 모델명) 3 제조인증과 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 기계조인증가 보로의 작성요령, 각 로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관한 서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제10조의6(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한다 정 2018.9 .< 둔다.<개청 2015. 1. 28., 2010. 3.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전에 되듬 그 포기 납푸를 지그르기 .<개정 2018. 9. 11.>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유통정보 및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기기통 합정보"라 한다)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 2.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하저답시시스템이 오영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목적 1. 목석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산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회계 공고이 방법 2. 3. 2. 법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3. 법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의료기기 표준코드 관리 4. 의료기기통합정보 및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제출・등록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지원 5. 법제31조의3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법제31조의3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관리및 기술지원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업무[본조신설 2017. 8. 1.][제10조의3에서 이동 < 2021. 6. 15.>] 4. 6. 8. 공기 | 공고의 방법 | 정관의 변경 |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 9. 10. 11. 건 고시한다. 요 사항 ④ 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3. 13 2018. 12. 11.> ⑥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본도신설 2017. 8. 1.] [제10조의3에서 이동 <2021. 6. 15.>] 13.,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3. 13.] 제12조의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2조 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 한 재정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에게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 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8. 3. 13.> 음 각 오의 사업을 안다.<개성 2013. 3. 23., 2015. 1. 28., 2018. 3. 13.>
1. 의료기기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 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2.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3.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인증・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호보 및 지원 동도 못 시원 4. 의료기기의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5. 의료기기 안전 관련 정책수립 지원 을 위한 조사・연구 6.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 6.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7.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및 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신고 정보 등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이하 "의료기기안전정보"라 한다)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정보 및기술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이 수행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3. 13.> 2018 2018. 3. 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이 수행하는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지원하기위하여「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의료기기안전정보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④ 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안전정보 모 니터링센터의 지정, 사업범위, 운영 등 에 필요한 사건 신설 2020. 4. 7.> [제목개정 2018. 3. 13.]

제59조의3(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의 지정)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의료기 기안전정보(이하 "의료기기안전정보"라 한다)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 안나) 모니터팅센터(이아 "모니터팅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의4서식의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계획 2.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 요 경비 3.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4.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적 (해당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3조제 3. 설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 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3조제 3항에 따라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모니터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 또는 구역별로 나누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3조제 3항에 따라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0호의5서 식의 모니터링센터 지정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식의 모디더당센터 시성시를 필급해 무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신설 2020. 12. 4.

제43조의2(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 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1.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효능이 없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인체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목개정 2021. 7. 20.]	제60조(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절차 • 방법) 법 제43조의2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은「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43조의3(정보원의 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4조제 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본조신설 2015. 1. 28.] [제목개정 2018. 3. 13.]	제61조(정보원의 지도・감독)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한 인증 또는 신고 업무 수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운영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 6. 14.]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① 정보원의 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은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 · 평가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기안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연구기관
4. 의료기기취급자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연구기관
4. 의료기기취급자
② 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생보와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등의 개한 포함된 자료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의 가능한 부분의 사람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가 있다고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하여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통합하여는 기계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수행할 수 있다고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수행을 보이 가능한 부분을 자료를 통합한 부분의 기관 등한 부분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지하고 목구 대생되지 아니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고 복구 되어야 한다. 에 제 1 한 기관 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을 요청한 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전 다. 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장이 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13.]

제43조의5(인과관계조사관) ① 정보원 장은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 명을 위하여 조사관(이하 "인과관계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정보원장은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거나 취속하였을 때에는 시세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원장은 인과관계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의료기기 등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점포 나 사무소,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보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과관계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관계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인과관계조 사관의 자격 및 직무 범위, 증표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 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 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13.]

지나. 1. 의료기기 사용 중 제51조제1항제 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부작용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를 사용한 환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증후, 증상 또는 질병이 다수 발생한 경

우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 •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43조의5제3항 후단에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0호의4서식과 같다.
⑤ 법 제43조의5제3항 후단에서 "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사내용

| 사내용 2.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제출자료의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5.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본조신설 2018. 6. 14.]

제43조의6(보험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이하여 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0.]

제12조의5(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 ① 법 제43조의6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 조업자・수입업자"란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 기(이하 "인체이식형의료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수입업자를 말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 조업자・수입업자는 제외한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 2. 수출만을 목적으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수입업자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인 체이식형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자 사 가. 해외의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 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가입 중인 보험 또는 공제가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가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 국 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까지 보장할

| 것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고 B 2.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된 그 밖의 보 험 또는 공제 [본조신설 2022. 7. 19.]

것

제12조의6(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 등) ①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 1명당 1억 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1명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 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장이 원인이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명당 1억 5천만원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제2호 및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이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 중 사망한 날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을 뺀 금액 이우의 기간에 내해 시급한 보험금을 뺀 금액 ② 법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료기기 제 조업자·수입업자는 인체이식형의료기 기 판매일의 전날까지 의료기기책임보 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의료기기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제12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험회사 등의 명칭,계약자,보험금액,유효기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의료기기책임보험등에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수입업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수입업자: 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점보에는 병경 또는 갱신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갱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제3항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회사 등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를 제3항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회사 등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가입과관련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할수있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7. 12. 1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위탁 인증・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8., 2018. 3. 13., 2019. 4. 23.>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30., 2016. 5. 31., 2017. 8. 1., 2019. 5. 5. 21., 2022. 1. 18., 2025. 2. 7.>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삭제<2015. 6. 30.>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삭제<2015. 6. 30.> 삭제<2015. 6. 30.> 1. 3. J. J. 30.> J. 삭세<2015. 6. 30.> 6.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 경허가 7. 법 제14조에 따르 기기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휴업·재 •변경 신고의 수리 개 기 · 신경 신고의 구디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9. 삭제 <2015. 6. 30.> 10.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에 따른 조건의 제(고해 되는 고든) . 삭제<2015. 6. 30.> .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 11. 13.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 변경 신고의 수리 13의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한에 미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13의2. 답제31조제2형 및 제3형에 따른 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13의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 분의 감면 도 그 묘 년 13의4.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이 물(異物)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 (로(莱柳) 亡 b 전한 소작 및 그 밖에 별 요한 조치 13의5.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이 물 발견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의 공표 그 0 표 14.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14의2. 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 및 조치 . ', '' 비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1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해체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함 , 그 밖의 필요한 처분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17. 법 • 봉인, • ㅎ 긴, 그 ᆩᅴ 드 그 18.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9.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 급 제30소에 되는 이기 소는 단증 위소, 품목류 • 품목의 제조 • 수입 | 및 업무 정지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의 취소 금치 20. 및 지수
21.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품목의 제조・수입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21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교육, 해촉 및 단독출입의 승인
22. 법 제49조에 따른 제조업・수입업허가증의 갱신
2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업・수입업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
24.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삭제<2020. 9. 8.>
[전문개정 2011. 10. 7.] 뎇 ② 삭제<2020. 9. 8.> [전문개<u>정 2011. 10. 7.]</u>

제6조(제조인증의 절차) ①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②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인증을 신청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제6호서식의 제조인증서를 발급하고, 제조인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8. 6. 14.> 1. 인증반호 및 인증연월일 모델명)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인증연월일 2.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인증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제7조(제조신고의 절차) ①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5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②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제조신고증을 발급하고, 제조신고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8. 6.

14., 2024. 8. /.>
1.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2. 명칭(제품명, 품목명 및 모델명)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신고(조건부 제조신고와 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과관계조사관 2.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문서심 사를 수행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임 원 및 직원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를 수행하는 품질관 리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4.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5. 1. 28.] 제45조(제출자료의 보호)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5. 1. 28.] 제45조(제출자료의 보호)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세11조, 세12조 또는 세15조에 따라 사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의 보호를 문서로 요청하면 그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 3.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검토한 자는 그 내용을	
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삭제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학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반촉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8. 8., 2024. 10. 22.> 1.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 제6조제 1항 자연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제6조제 1항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6조제 1항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6조제 1항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제4호의 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속인이 제1항 다른 자에게 그 영업을 양도한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하나는 경우에는 사속인이 자기를 승계한다.<개정 2023. 8. 8.>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6조제 2항・제6항 또는 제15조제2항・제6장도 또는 시고에 막라 하나 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일하다는 하다.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 정 2015. 1. 28.> 제4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 47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 정인 제공업자들 또는 일르기기 파종연	
또는 우입업사의 시위를 증계한다.<개 정 2015. 1. 28.> 제4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 47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 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 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 로운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 업자(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 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 조신고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 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이하 "제조허 가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허가ㆍ 인증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 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유효기 가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유효기 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유 효기간은 제8조의2에 따른 검토가 끝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21. 8. 17.>

17.>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허가등을 갱신받아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안전성 • 유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허가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조건으로 해당 제조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1. 8. 17.> 2021. 8. 17.>

| 2021. 8. 17.>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자 • 수입업자가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
⑥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을 갱신받을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수입되지 못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성 2021. 8. 17.>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제조허가등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7.> [전문개정 2020. 4. 7.]

제62조(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허가등(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 다)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 2. 법 제7조에 따라 조건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조건부 제조신 고를 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0. 12. 4.]

제62조의2(제조허가등의 갱신) ① 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등의 갱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것 1. 애당 의료기기의 안신성 · 유요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것 2. 제조허가등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 3.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생산 또는 수 입실적이 있을 것 4. 의료기기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4. 의료기기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했을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경신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서식의 제조(수입)이증 갱신 신청서 또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제조(수입)신고 갱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제조(수입)허가 갱신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정보원[제조(수입)인증・신고 갱신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 이하 이 소에서 트리고 한다.
1.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인증서 원본
2.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 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의 중인 모든 구립 클릭에 단단 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 조허가등의 갱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료

자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실태조 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전 문가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은

식품의약품인인시영 보는 영모편면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을 신해 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별지 제6호 식의 제조(수입) 인증서를 새로 발급 주어야 하며, 제조(수입)신고의 경우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라 시소 또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 4. 제11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자 5. 삭제<2021. 3. 23.> 6.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	제65조(수구료) ① 법 제50조에 따른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讨하, 로 변호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讨하, 로 선물 는 별도 10과 같다. 다만, 讨하, 로 선물 는 신호인 달 년경하는 등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함 등을 시청인 또는 선기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는 수소로를 면제하고, 다음 그 수수로를 면제하고, 다음 는 수수로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 1. 별표 10 제1호 또는 제18호에 따른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 1. 별표 10 제1호 또는 제18호에 따른수수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강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 1. 별표 10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수수료 10이분의 50의 범위에서 5분 다음 10의 전략 당한전체장이 경등을 위하는 경우에 작용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범표 10 제3호·제4호·제4호·제5호·제4호·제5호·제4호·대5호·제4호·대5호·제4호·대5호·제4호·대5호·제4호·대5호·제4호·대5호·대4호·대5호·대5호·대5호·대5호·대5호·대5호·대5호·대5호·대5호·대5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	
.<개성 2016. 12. 2., 2021. 7. 20.,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한 자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	
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자 3의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등의 라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u>)할 수 있다.</u>	

제52조(법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경 2016. 12. 2., 2018. 3, 13., 2021. 7. 20., 2023. 8. 8.> 1. 제10조제1항 · 제2항 전단 · 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3조제1항(제15조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3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8조의29제1항,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 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192. 거짓이나 그 박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당인을 받은 자 193. 거짓이나 그 박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순원 중인을 받은 자 193. 거짓이나 그 박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 2세1항에 따른 변경하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94. 제13조제3항에(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음 위반하여 영화 제2제 학계1조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음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인점인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취 생각하다 취득하게 자 1918.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화 자 191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화 자 19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화 지 191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축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용,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축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용,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축진 업무를 위탁한 자
7. 20, 2002, 8, 8, 5, 1. 제10조제1항 · 제2항 전단 · 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변경하기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자자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자 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의료기기 판매종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 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적인 업무를 위탁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 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적인 업무를 위탁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 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적인 업무를 위탁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 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적인 업무를 위탁한 자
세4항 또는 세17조세3항에 따라 순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 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 로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
2세1항에 따는 면경어가 또는 면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 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 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 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 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 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로기기 판매족신 업무를 위탁한 자 1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 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 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9.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 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또는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9.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 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149. 세16포의2세18을 위한하여 전 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2.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폐기・봉함・봉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하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021. 3. 23. 법률 제17978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2020. 8. 28. 위헌 결정 된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 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 한 경우' 부분은 삭제함]
한 경우' 부분은 삭제함] 제53조 삭제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지 세10소세5당, 세10소의2세3당 또는 세28조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결과보고 서, 비임상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관리심 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	
사 2. 제13조의2제1항(제15조제6항 또는 제18조제4항에서 조용하는 경우를 표	
또는 중개하시 아니아거나 해당 시물모 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공개한 자	
3의2. 세13조의2세2항을 위반하여 위 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 지 아니한 자	
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안 사 4의2.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의 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한 사실을 해	
아니안 사 4의2.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의 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한 사실을 해 당 업무를 위탁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서면(「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봉함한 의료 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본조신설 2015. 12. 29.]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1조제 1항 · 제5항을 위반한 자	
지, 제16소세 18, 제20소부터 제23소개지, 제30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1조제 1항 ·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 수거 · 폐쇄 또는 그 밖의 처분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 또는 제36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검사, 회수, 폐기, 공표, 사용중지, 업무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5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제54조의2(벌칙) ① 제6조제7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2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5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2. 2., 2023. 8.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설 2016. 12. 2., 2018. 3. 13., 2021. 7. 20.> 1. 삭제<2021. 7. 20.> 2. 삭제<2021. 7. 20.> 3. 삭제<2021. 7. 20.> 4.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5.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질문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본조신설 2014. 1. 28.]	
제55조(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로를 부과한다. ~개청 2014. 1. 128., 2015. 1. 28., 2016. 12. 2., 2018. 12. 11., 2020. 4. 7., 2023. 8. 8. 9. 1. 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 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 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0일.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의로기기의 생산실적, 수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5조제6항 시 46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의로기기의 생산실적, 수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의 3. 제3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의로기기의 판매실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의로기기의 판매실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의로기기의 판매실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의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의로기기를 함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의로기기를 함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의로기기를 함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의로기 가를 함정보시는데에 장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의로 기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의로 기존을 중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1조의 5분위반하여의로 가를 함정보시는데에 장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1조의 5분위반하여의로 가를 함정보시는데에 장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1조의 5분위반하여의로 가를 함정보시는데에 장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시장 조심하고 등 발라지도지 사 4시장 그라고 수 가장이 부리가 지존한다. 지수한다. 조심하고 하는 가장이 나는 가장이 나는 가장이 그라고 사 4년을 자 2013. 3. 23. 2017. 12. 19.>